

반계 유형원의 敎選論과 貢舉制 구상*

송양섭**

- I. 머리말
- II. 鄉約의 시행과 敎化的 진작
- III. 學制改編과 貢舉制의 실시
- IV. 貢舉制와 ‘敎選’의 지향
- V. 맺음말

I. 머리말

유형원의 『반계수록』에는 공전제에 입각한 민생의 안정과 국가운영을 위한 물질 토대의 확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상국가 건설에 대한 야심찬 기획이 체계적으로 개진되어 있다.¹⁾ 여기에는 재정운영과 인사제도의 쇄신, 관계개편 등 국가운영의 거의 전 부문이 망라되었는데 그 가운데 ‘敎選’, 즉 敎學 과 選士에 대한 제도개혁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바로 「敎選之制」·「敎選攷說」이 다루는 내용이다. 왕조국가의 운영에서 학교는 ‘風化的 근원’이자 ‘인재의 府庫’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道’로 받아들여졌고²⁾ 스스로 인용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6037107).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대표논저: 2017, 「어시제 최성환의 국가개혁 구상」 『어시제 최성환 연구』, 학자원 ; 2016 「19세기 부세운영과 ‘향중공론’의 대두」 『역사비평』 116 ; 2015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손상익하의 정치학, 그 이상과 현실」, 태학사

1)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公’이념과 이상국가론」 『조선시대사학보』 64

2) 『중종실록』 권32, 13년 3월 7일 병오

한 ‘옛王者는 나라를 세우고 민에게 임금노릇을 할 때 敎學으로 우선을 삼았다’라는 學記의 언급³⁾대로 국가적 차원의 교학체제의 구축은 유형원이 구상한 도덕국가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과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우선, 『반계수록』의 개혁론 전반을 다루면서 貢擧制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기 위한 관료체제 수립을 지향했다는 천관우의 연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⁴⁾ 이 연구는 유형원 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실학 개념의 정립까지 나아간 것으로 ‘교선’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정구복은 실학의 근대적 성격과 관련하여 유형원의 생각이 세습형 사회에서 성취형 사회로의 변혁을 꾀한 것으로 공거제가 사족신분을 철폐하고 공평한 관직진출의 기회를 통해 정치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육성, 관직에 등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논의를 더욱 진전시켰다.⁵⁾

김준석도 공거제가 세습문벌의 특권을 제한하고 인품과 능력본위의 관리 선발을 보장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층·관원층이 주도하는 사회·정치운영을 목표로 점진적인 신분제 해체를 전망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육체계의 사적·독점적 경향을 배격하고 중등과정 이상은 관리양성에 직결되는 공교육 체계에 흡수·관리됨으로써 교육의 공유·균등화, 교육과 관리선발의 일원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하였다.⁶⁾ 와타나베 마나부(渡部學)는 공거제의 기초단계인 鄉庠에 주목하여 그것이 자생적 교육기관인 서원·서당을 제도화 한 것이지만 사학·읍학과 달리 독자적이었고 교화적 서당교육으로 진화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평가했다.⁷⁾ 萬振

3) 『磻溪隨錄』 卷11, 敎選攷說 上 三代敎人取士之法

4) 천관우, 1952·1953, 「반계 유형원 연구」上·下, 『역사학보』 2·3

5) 정구복, 1970, 「반계 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 『역사학보』 45

6) 김준석, 1993, 「유형원의 정치·국방체제 개혁론」 『동방학지』 77·78·79

7) 渡部學, 1969, 『朝鮮敎育史研究』, 雄山閣, 東京

초도 『반계수록』의 구상을 황중희의 『명이대방록』과 비교하면서 평등한 교육을 지향한 근대적인 교육개혁안이라고 평가하였다.⁸⁾

교육학 분야의 연구도 적지 않다. 유형원의 구상이 왕안석이 주장한 大學三舍法의 영향을 받았으며 유교지치주의적 이념의 실현을 꾀한 것이라거나⁹⁾, 유교규범의 충실한 구현과 학제의 연계성, 그리고 인재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¹⁰⁾를 비롯하여 實理論에 기반한 士類間 교육기회 평등론과 下賤에 대한 차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적인 개혁책으로 근대적인 측면과 왕조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한 보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연구¹¹⁾가 있다. 또한 유형원의 교육체계가 국가주도의 교육체계, 단계적인 학제, 그리고 인재양성과 관리선발을 연계시키는 구상으로 후대의 실학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¹²⁾, 유형원의 인간관과 학문관, 그리고 田制에 기초한 교육제도, 인재선발 및 육성에 대한 공교육체제로의 개혁사상과 의의를 고찰한 연구¹³⁾, 「교선지제」의 종합성과 중층성을 강조하고 유형원의 구상을 향약·학교·선발이라는 3각체제의 개혁안을 현실에 실행하고자 한 의도의 산물이라는 평가¹⁴⁾도 제출되어 있다.¹⁵⁾

이상의 연구사 검토에서 드러나듯이 유형원의 ‘교선’에 대한 연구

8) 萬振超, 2017, 「17세기 한중실학자의 교육개혁안 비교연구」 『한국실학연구』 33

9) 이원호, 1976, 「반계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 『벽계이인기박사교회기념교육학논총』 ; 1984 『반계 유형원의 교육론 연구』 『사대논문집』 8

10) 이문원, 1995, 「반계 유형원의 교육관」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11) 전도웅, 1998, 「반계의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구상」 『용인대학교논문집』 15 ; 전도웅, 1998 「반계 유형원의 교육제도개혁론과 경학사상」 『인문사회과학연구』 2

12) 황경로, 2001, 『반계 유형원의 교육개혁론 연구』, 강원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3) 김재섭, 2002, 「반계 유형원의 교육개혁사상 - 공교육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4

14) 최광만, 2004, 「반계 유형원의 교육개혁론 분석」 『교육사학연구』 14 ; 2010, 「『반계수록』 「교선고설」에 나타난 유형원의 교육사관」 『교육사학연구』 20 ; 2017, 「조선후기 교육사 탐구」, 충남대출판문화원

15) ‘실학자’의 교육제도 개혁론에 대한 연구사 검토는 차미희, 2006 「실학자의 교육제도 개혁론 ;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실학사상연구』 2 (정치경제편), 해안을 참조할 것

도 대부분 실학담론의 틀에서 근대성을 잣대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과거제와 이를 바탕으로 운영된 관료제의 운영은 이미 장구한 기간 체제화한 것으로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지만으로 인물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는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된 뿌리 깊은 것이었다. 이는 과거제의 경험을 공유한 중국·베트남 등에서도 동일하게 포착되는 바, 비슷한 시기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선례를 찾기 힘든 독자적인 사회체제의 산물이었다. 조선 왕조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제에 일정하게 투영된 ‘능력’과 ‘효율’의 기준은 근대사회와 무관하게 선취된 고유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유형원이 과거제로 표상되는 ‘능력주의’와 ‘결과주의’적 인재선발방식이 가진 문제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공거제를 새삼스레 서구적 근대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다.¹⁶⁾

16)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 민병희 옮김, 2012 『잃어버린 근대성들』, 너머북스. 중국을 예로 들면 과거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평하고 평등한 제도도 합격만 하면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실제 운영은 극히 일부의 합격자가 서민과 결절된 부과 권력을 누렸을 뿐, 사실은 군주독재를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더구나 과거응시가 개인 단위가 아닌 종족 혹은 가문 등으로 대표되는 언어·문화·경제 자본 등 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특정한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과거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한 점에서 ‘능력주의’·‘현능주의’로 번역되는 마이클 영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의 개념이 일률적인 능력중심 사회가 능력에 따른 개인의 차별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능력의 세습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일단 군현제적 지배를 기본으로 하는 조선왕조가 일종의 齊民의 秩序를 지향하면서 세습이 아닌 과거합격 여부와 같은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관료를 선발했다는 점은 이러한 ‘능력주의’와 결합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균등’과 ‘공정’을 표방하는 ‘능력주의’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그것이 가진 본원적인 약점은 여전했고 17세기 양반사족의 특권세력화라는 사회변화에 직면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군현제의 ‘능력주의’와 봉건제의 신분세습이라는 두 가지 상호모순적

그러므로 유형원 공거제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를 위해서는 근대주의적 논단이나 교육 영역에 국한한 미시적 접근에 매달리기 보다 17세기 과거제 운영이 직면한 구체적인 모순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敎選'의 구상이 가지는 총체적 사회개혁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성리학에 침윤된 충실한 王民의 양성(敎)과 우수한 관료의 선발(選)이라는 일견 별개인 듯 하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된 두 가지 지향을 하나의 制度論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당대 현실에서 맥락화 하는 작업이다.¹⁷⁾

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조선사회는 '능력주의'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한편에서 양반층의 세습적 족벌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 표면적으로 과거제와 같은 '능력주의'를 표방한 양반제의 내면에는 별벌세력의 문벌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능력주의'의 복원을 강하게 주장하는 논의들이 18세기 접어들어 활발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유형원의 敎選論은 이같이 복합적인 사회동향에 대해 '능력주의'가 가진 위험성과 세습별벌의 권력독점을 동시에 비판한 위에 강구해낸 것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논의라는 점에서 가위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와 관련된 논고는 다음과 같다. 강창동, 2005, 「과거제 선발경쟁의 교육사회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2 ; 平田茂樹 지음, 김용천 옮김, 2007, 『科擧와 관료제』, 동과 서 ; 성영관, 2015, 「메리토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로-마이클 영의논의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3-2 ; 박훈, 2017, 「'봉건사회·군현사회'와 동아시아 '근대'시론」 『동북아역사논총』 57 ; 조성산, 2017, 「18~19세기 조선 봉건·군현제 논의의 역사적 전개」 『역사학보』 236

- 17) '敎選'의 용례는 조선은 물론 중국의 각종 문헌에서 찾아지지 않는 유형원만의 독창적인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敎學과 選士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禮記』의 경우, 「學記」편에서 敎學, 「王制」편에서 選士에 대해 언급하고 『文獻通考』에서도 「選舉考」와 「學校考」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는 조선의 『東國文獻備考』에 그대로 차용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세 중엽 寒洲 李震相의 『畝忠錄』과 俞致範의 『一嘯錄』에 '敎選'이 하나의 편목으로 확인되는 점이다(정윤화, 2016, 「19세기 중엽 한주 이진상의 현실인식과 국가체제개혁론」 『조선시대사학보』 79 ; 『一嘯錄』). 별도의 비교분석이 가해져야 하겠지만 두 저술 공히 『반계수록』의 영향이 분명하게 감지되는데 이는 유형원의 敎選論이 이후 지식인 그룹에 의해 일정하게 계승되어 독자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하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유형원의 敎選論이 국가적 차원에서 향촌사회 저변의 광범

『반계수록』의 개별 편목은 유형원이 구상하는 이상국가론의 유기적인 구성임은 물론 그 자체 독자적 제도개혁론으로서 논리적 완결을 갖추고 있다. '敎選' 부문도 「鄉約事目」을 통해 향촌사회 교화를 위한 방안을 개진하고 「學校事目」에서 학제의 개편과 교육문제를 다루었으며 「貢舉事目」을 통해 관료선발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세 가지는 별도의 규정이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국가교학으로서 성리학적 대민 교화와 관료 엘리트의 충원을 통한 정치·행정 권력의 재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합된 제도적 과정으로 묶어내고 있다. 유형원의 주장은 당시 왕조 정부의 정책론과 조야의 지식인들이 제기한 제도론의 흐름을 적절히 이어가고 있었던 바, 여기에는 향촌사회 내부의 교화시스템의 필요성, 관학의 쇠퇴와 과거제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점차 별렬화한 특권세력의 관직 독점 문제도 놓여있었다. 이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규정성을 염두에 두고 교선으로 표상되고 공거제로 구체화된 총체적 제도론으로 유형원의 구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鄉約의 시행과 敎化의 진작

유형원은 '先王은 기르기를 두텁게 하고 가르치기를 돈독하게 하여 인재 가리기를 정밀하게 하고 살피기를 깊게 한 후에 자리를 명하고 전적으로 맡겼으니 대저 그렇게 한 뒤에야 관직이 책임자를 얻어 治化가 행하고 백성이 살 곳을 얻어 그 功績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민의 사회적 교화·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발탁한 관료엘리트야말로 治世를 기약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규정

위한 교화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제도와 관료선발제를 운영하고 자 한 종합적인 개혁구상이었다는 점에서 앞 시기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방안이었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하였다.¹⁸⁾ ‘교화와 정령은 별개가 아니’었던 만큼¹⁹⁾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단지 講說만이 아니라 마음에 깨달아서 修身齊家하여 천하에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화·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문자적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국가까지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는,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²⁰⁾

公田制는 그 중요한 전제로 유형원은 ‘교화’의 지역별 격차는 田制가 무너져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²¹⁾ 삼대의 제도가 가진 취지를 ‘기른 뒤에 가르치고 가르친 뒤에 등용하는 것(養而敎之 敎而擧之)’으로 규정했다.²²⁾ 공전제를 기반으로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한 후 교화를 통해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인격적 성숙을 꾀하고 이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선발, 관료로 등용하는 제도적 과정이 스스로 구상한 이상국가 운영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전제를 통한 養民이 모든 개혁의 기반이었음은 여기에서도 확인된다.²³⁾ ‘敎選’은 유형원이 기획한 도덕국가 운영의 출발이자 궁극의 지향이기도 했다.

풍속을 교화하는 것은 곧 인심을 바로잡는 근본이며 모든 정령이 이것을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官長된 자가 만일 어진 사대부와 함께 서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비록 교화를 세우고 정사를 행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겠는가?²⁴⁾

국가의 통치가 사회말단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향촌사회 내부의 자

18)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19)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20)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21)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22) 『磻溪隨錄』 卷12, 敎選攷說 下 漢以下至今取士之法

23) 공전제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참조

24)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율적인 교화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수령이 '어진 사대부'를 교화의 조력자로 삼아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유형원이 꼽은 것이 바로 鄉約이었다. 주지하듯이 향약은 북송 말 呂氏鄉約을 시초로 남송대 朱子에 의해 수정 증보된 「朱子增損呂氏鄉約」의 형태로 조선에 들어와 향촌사회 운영을 위한 하나의 실천 규약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²⁵⁾

중종대 기묘사화를 거치면서 사람에 의해 추진된 향약보급 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언해하여 반포하는 등 정치운동 내지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족들은 향약을 통해 교화와 처벌을 보완적으로 활용해가면서 지역지배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환난구휼적 측면은 특별히 강조되었다. 향약의 전국적인 실시가 마지막으로 논의된 선조 때에는 주자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자향약을 수정·변용하여 현실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7세기 접어들어 鄉所의 지위가 점차 격하되어 수령권에 예속되고 사족세력이 鄉任職을 기피하면서 향소로부터 멀어지자 수령은 점차 향약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17세기 후반 향약기구의 자치적 권한은 더욱 약화되어갔으며 향소의 향임들이 향약의 직임을 겸하면서 향약은 점차 수령의 하부기구로 편입하게 된다.²⁶⁾ 유형원의 향약론은 이같이 16세기 사림의 사회·정치적 향약론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17세기 접어들어 본격화 한 관 주도 향약실시논의의 흐름을 타고 제기될 수 있었다.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의 네 가지 조목을 바탕으로 당시 관행을 참작하여 적절한 향촌교화책으로 강구한 유형원의 향약은 애초 '土類가 사사로이 서로 맺은 것(土類私相約束者)'을 적극적으로 용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한 것이 핵심이었다.²⁷⁾

25) 이성무, 1991, 「여씨향약과 주자증손여씨향약」, 『진단학보』 71·72병합호

26) 한상권, 1984, 「16·17세기 향약의 구조와 성격」, 『진단학보』 58

27)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鄉約

17세기 접어들어 향약실시론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약을 學規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주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유형원의 고모부인 東溟 金世濂의 「苞山鄉約」(현풍)에서는 학규와 향약이 결합되어 있었다. **비슷한 시기 申達道の 「全州府鄉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朱子の 「白鹿洞規」를 첨부하고 향약과 학규를 ‘體驗과 講學’의 상호 불가결한 관계로 파악하였다.** 강학의 학문활동을 통해 향약 본의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고 향약의 실천운동으로 강학의 이념을 현실화한다는 취지였다. 향약주도층에 따라 활용되는 학교조직도 서로 달랐다. 수령은 향교와 四面 書塾을, 사족은 서원과 서당을 조직의 기초로 하였다.²⁸⁾

유형원도 주자의 「白鹿洞學規」에 先儒의 條說 몇 개를 덧붙여 學規로 삼아 향약조직과 연계시키고 있다. 학제와의 결합은 당시 향약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소로 고모부인 김세렴의 현풍향약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유형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이 유형원은 사림과의 鄉約論에 17세기 향약과 학제의 연계논의라는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향촌사회의 교화와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입론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원은 이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여 향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약은 옛날 井田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守望하거나 서로 돕고 병을 서로 구완하고 출입할 때 서로 도와주고 또 자제로 하여금 家塾·黨庠·

28) 한상권, 1984, 앞의 글, 52~55쪽. 하지만 「포산향약」은 1602년 北厓 金圻가 「주자증손여씨향약」과 이황의 「예안향림약조」, 이이의 향약을 참조하여 만든 것을 김세렴이 현풍현감으로 부임하면서 轉寫하여 시행한 것이다. 김세렴의 저작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초 一鄕에서 실시된 「포산향약」은 경상감사의 상주로 국왕의 계가를 거쳐 영남전역에 반포되어 각읍에서 향약을 시행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19세기까지도 영남에서는 이를 모델로 한 향약이 작성되었을 만큼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한상권, 1984, 앞의 글; 김용덕, 1990, 「김기향약연구」 『조선시대향약연구』 민음사; 박현순, 2017, 「17~18세기 향약의 반상간 부조에 대한 고찰-사족층과 하인층의 결합양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2).

州序에서 배워 孝悌의 義를 도탑게 하는 것이니 三代의 다스림이 융성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진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世道가 쇠미해지고 정치가 어지러워 백성이 흩어져서 교육은 위에서 쇠퇴해지고 풍속은 아래에서 허물어지니 아아 슬프다. 이끌어줄 방법은 향약을 다시 밝히는 것만 한 것이 없다.²⁹⁾

井田으로 상징되는 생활 공동체를 기본단위로 구성원의 자제들에 대한 교화와 교육 기능을 중첩시킨 향약이야말로 교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이었다. 당시 왕조정부의 시책도 향촌사회 내부의 공동체적 유대와 윤리를 바탕으로 상호부조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향촌사회의 안정을 통한 보다 효과적인 지역지배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형원의 인식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백성이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봉양할 줄 안 뒤에야 이에 집에 들어와서 孝悌할 수 있으니 집에 들어와서 孝悌하며 밖에 나가서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봉양한 뒤라야 教化가 이루어지고 教化가 이루어진 뒤라야 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다.³⁰⁾

교화의 방식은 孝悌의 가족윤리를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 밖 사회의 연장자에 대한 尊養까지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유가의 전형적 논리 그대로였다. 향약 또한 향촌사회 내부의 공론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도덕규율을 통해 공동체적 상호부조와 화합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였다.³¹⁾

향약의 조직은 당시 각 지역의 관행을 참작하여 유연하게 정하도

29)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30)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31) 예컨대 향약의 네 가지 조목 중 과실상규는 향약구성원들이 스스로 살피고 서로 規戒하되 사소한 잘못은 은밀히 알려주고 중대한 일은 公衆이 모여 경계하고 벌을 줄 때도 반드시 衆議에 부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환난상휼의 경우, 긴급한 구호를 요할 때 約正이 구호를 독려하면 洞約者들이 물자나 인력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실천하도록 하였다(『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록 했다. 유형원은 향약의 성패가 책임자를 얻는데 달렸다고 하면서 주요 직임 담당자를 신중하게 선발하여 최대한 예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향약의 책임자인 都約正은 '나이가 많고 덕행이 가장 높아 일읍의 여러 사람이 추천하(一邑衆推年長德行最尊)'거나 '덕망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믿고 복종하는 사람(德望衆所信服者)'이 말도록 하였다. 이를 보좌하는 부약정 2명은 '學術과 操行이 있는 사람(有學術操行者)'이 담당하도록 하고 直月은 1명씩 돌아가면서 말도록 하였다. 鄉所의 鄉官은 鄉正을 당연직으로 겸하였기 때문에 兼約正이라고도 했다. 향소 향관이 약정을 겸한데서 보듯 향약은 향소를 바탕으로 운영하도록 했다.³²⁾ 이 같은 방안은 유형원이 제시한 지방제도 개혁안에서 鄉所의 典正과 典檢 등을 수령·감사가 임명하고 관직체계와 연계, '鄉官'으로 官任化하여 해당 지역의 유력 재지세력을 흡인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상과 맞물려 있었다.³³⁾

유형원은 당시 향소가 향약을 위해 설치된 것이지만 '수령이 官事를 獨察할 수 없어서 그대로 그것을 관부의 보좌로 삼았'고 이후 향약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다만 염치없는 무리를 취하여 억지로 부리기를 吏隸와 같이'하였다고 하면서 수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향소 본연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고 이들이 수령의 수족과 같은 처지로 내몰리는 현실을 비판하였다.³⁴⁾ 원래 유향소에 뿌리를 둔 향소는 중앙정부의 지배에 대응한 지방자치의 상징이자 이해절충 기구였다. 정부는 임진왜란 전후 행정업무를 포함한 각종 직책을 향소에 부여함으로써 민에 대한 통치와 재지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향촌통제책 추진, 경제소 혁파에 따른 재지세력의 관심저하, 면리제·오가통제의 정비, 그리고 재지세력의 분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향소의 지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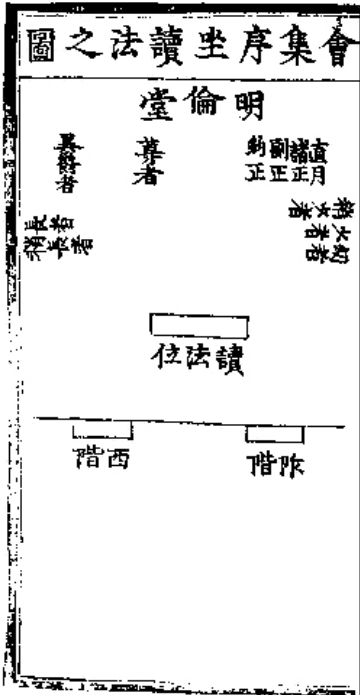
32)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33) 송양섭, 2014, 「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27

34) 『磻溪隨錄』 補遺 卷1, 郡縣制 各邑

35) 오영교, 2001,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혜안, 180~184쪽. 향소·향청에 대한

〈그림 31〉 『반계수록』의
會集序坐讀法圖



面·里 단위의 직임에 대해서도 面(鄉) 단위의 약정(1명)은 관직경력 여부를 따지지 말고 '學術과 操行이 있는' 사족이나 장로를 임명하고, 直月은 鄉約員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면의 약정은 가급적 鄉正이 겸임하지 말도록 했다. 교화와 정령은 별개가 아니지만 각기 업무가 중요한 만큼 가급적 향정과 면임은 각기 고유한 임무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다.³⁶⁾ 里 단위에서는 일반민 가운데 '나이가 많고 剛謹한 사람(年長剛謹者)'을 里正으로 삼아 향약의 직임을 겸하여 해당 마을민에 대한 勸勉·曉諭·糾彈·檢察 등의 일을 맡도록 했다. '부지런하고 일을 잘 보는 사람(勤幹者)'은 色掌을 맡겨 향약내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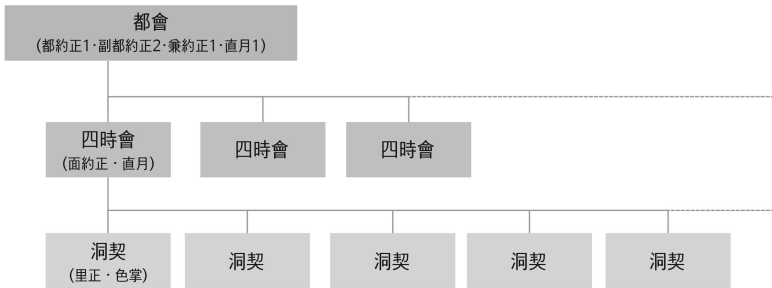
그밖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용덕, 1978, 「향청연혁고」 『향청연구』, 한국연구원 ; 菅野修一, 1981, 「李朝後期の郷所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 한상권, 1984, 앞의 글

36)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都約正·副約正·各面約正·里正은 가급적 바꾸지 말고 부득이 교체할 경우 향약원내 父老의 衆議로 추천, 결정하여 관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부약정 이하의 교체도 도약정이 회의 때 衆議로 擇定하여 관에 보고하고 직월이 통보하도록 하였다. 도약정이 과오가 있을 경우 '約中'에서 경고하고 부약정 이하인 경우는 교체하도록 하였다. '衆議'·'約中' 등 지역사회 내부의 의견이나 논의구조인 公論이야말로 이들 직임의 임면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자체적인 논의를 통해 임명된 인사는 관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게 된다.

색장은 임기 내 頃夫의 雜役이 면제되었다.³⁷⁾

향약에는 여러 가지 장부가 있었다. 읍 차원에서는 邑籍(都籍)을 만들어 해당 읍의 ‘土夫’를 파악해 두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문·무관 직자, 邑學의 內舍生, 武選, 世嫡의 有親有蔭者 등이 해당되었다. 일종의 鄉案인 듯 하다. 또한 德業籍(善籍)과 過失籍(惡籍)을 만들어 덕업상권과 과실상규의 실질적인 장부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면 단위에는 鄉籍이 있었다. 여기에는 邑籍에 등재된 해당 면 사람과 邑學의 外舍生, 忠義·忠順衛의 衛士, 庶孽有親有蔭者 등이 올라갔다.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장부는 없었다. 면 단위에도 德業籍과 過失籍이 있어서 過失籍 가운데 무겁게 처벌해야 할 사람은 春·秋會 때 도약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³⁸⁾

<그림 2> 향약의 조직과 임원



향약의 조직을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향약의 정기 총회에 해당하는 都會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 도약정과 부약정 주관 하에 鄉約正 이하 都籍에 오른 사람이 참여하여 읍학에서 講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 단위로 열리는 四時會는 면의 약정이 매년 鄉庠이

37)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38)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나 社倉·書院 가운데 적당한 장소를 택해 1·4·7·11월의 10일 約員들을 소집, 講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사회에는 鄉籍에 등재된 사람 모두가 참석대상이었으며 도약정과 부약정도 참석이 권장되었다. 일반 백성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었던 데서 보듯 이들 향약은 어디까지나 ‘士夫’, ‘士類’로 지칭되는 부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리 단위에서는 인근 마을끼리 결성한 洞契類를 포섭하여 하부조직을 이루도록 하였다. 당시 촌락사회에는 사족 중심의 결사체 조직과 기층민의 생활공동체 조직이 병존했다. 사족계는 촌락을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상위조직이며 그 예하에 기층민을 두고자 했다. 생활공동체로서 오랜 전통적 기반을 가진 村契들은 자연촌락 단위로 결속된 조직이었다.³⁹⁾

기실 이러한 촌락 단위의 규약과 결사는 향약과 표리를 이루기도 하고 향약과 무관하게 운영되기도 하면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이러한 촌락사회의 현실은 향약 조직의 객관적인 조건이 되었다. 선조 6년(1573) 8월 영의정 권철과 우의정 노수신 등이 향약실시를 주장하면서 ‘洞隣의 契’와 ‘香徒의 會’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한 것이 일례이다.⁴⁰⁾ 숙종 10년(1684)에는 서울의 향도를 향약으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논의된다.⁴¹⁾ 실제로 당시 향약은 동리 단위로 공동체적 구휼을 수행하는 하부조직과 향촌민에 대한 재판·처벌권을 행사하는 상부조직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⁴²⁾ 유형원의 방안도 마찬가지였다.

이웃 마을에 만일 鰥寡孤獨이나 굴러다니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모두 힘을 합하여 살도록 해주는 한편 官司에 알린다. 單寒한 民戶

39) 이혜준, 1990, 『조선 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 조직의 성격』 『조선 후기 향약 연구』 민음사, 130~131쪽

40)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7일 갑자

41) 『숙종실록』 권15, 숙종 10년 3월 22일 무자

42) 한상권, 1984, 앞의 글, 46~47쪽

가 먼 지역의 수자리에서 돌아오지 않고 妻子가 제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를 위해 보살피고 도와줄 것이며 혹 자식이나 손자 없이 죽어 거두어 장사지낼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을 안에서 장사를 지내준다.⁴³⁾

동계의 공동체적 상호부조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鰥寡孤獨類로 상징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삶에서 유리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원은 지역사회의 통합력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동계를 ‘上下合契’의 방식으로 신분 구분 없이 함께 결성하도록 하였는데 이 또한 당시 동계운영의 일반적인 형태로 양반은 上契長-上有司, 일반민은 下契長-下有司와 같이 신분에 따라 별도의 직임을 두어 운영하도록 한 것과 동일했다.⁴⁴⁾ 가령 장례와 같이 일상적인 부조를 요하는 사안은 ‘계를 함께하는 가까운 마을이 한결같이 約속대로 시행’하였다. 계원들은 매년 11월 쌀과 짚자리(藁薦)를 각출하여 하유사가 관리하다가 부모·본인·처상을 당한 사람에게 정해진 수량을 주도록 하였다. 초상이 나면 상·하계 모두 조문과 護喪을 하고 장사 때도 상·하계에서 각기 장정을 내 일을 치르도록 하였다. 사안이 큰 賑恤·救護 등은 먼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주례』의 家-比-閭-族-黨-州-鄉의 편제를 모범으로 차용하여 향촌사회 내부의 상호 보험과 구휼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⁴⁵⁾

이같이 유형원은 당시 촌락사회에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던 동계·동약 등 규약과 결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약의 하부조직으로 포섭함으로써 생활 공동체와 교화조직의 일체화를 꾀하였다. 이

43) 『磻溪隨錄』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44) 『磻溪隨錄』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당시 洞約·村契 등 각종 촌락조직은 임진왜란 이후 土族의 上契와 下民의 下契가 통합되어 上下合契가 출현하였다. 이는 전쟁 이후 사족들에게 하민들이 유리·이탈되어가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하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었다(이해준, 앞의 글, 130~131쪽).

45) 『磻溪隨錄』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또한 당시 시대적 추세를 원용한 것이었다. 향약의 운영은 향촌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관의 개입과 통제가 가해지는 형태였다. 향약에서 특히 상세한 것은 소민을 '선하게 교화(善敎)'하기 위한 조항들이었다. 가령 부모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형제간에 불화한 자, 장사나 제사를 제때 치르지 않은 자, 사족을 능멸한 자, 방계친족의 조부·숙부·형·누이뻘 되는 사람이나 尊長을 모욕하는 자, 싸움을 하거나 세력을 믿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창녀(遊女)와 관계하는 자, 남을 상하게 한 자,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을 作主한 자, 농사를 게을리한 자, 의관이 참람되거나 양반과 같이 말을 타는 자 등은 論罪되어 경중에 따라 태 10·20·30을 시행하고 '물과 불을 통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체의 보살핌에서 배제되었다. 규약 위반자에 대해서는 約中에서 제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안에 따라 官에 보고하여 처벌하기도 했다.⁴⁶⁾

유형원은 향촌교화의 주도세력으로 '士類'를 지목했다. 구체적으로는 邑都籍에 등재된 '士夫'로서 여기에는 문·무관직자, 邑學의 內舍生, 武選, 世嫡의 有親有蔭者 등과 面鄉籍에 오른 邑學의 外舍生, 忠義·忠順衛의 衛士, 庶孽有親有蔭者 등을 포괄하여 기존의 사족과 함께 한미한 집안의 선비나 전임관직자도 해당되었다.⁴⁷⁾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이들이야말로 수령과 협력하면서 향약을 주도하는 계층이자 教學體制 운영의 중심세력으로 유형원이 범주화한 그룹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원에게 교화는 스스로 기획한 이상국가의 출발이자 지향으로 그가 구상한 '교선'의 기초적 국면이자 저변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방법은 국가적 차원에서 향약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향약을 통한 교화는 보편적인 사회윤리나 도덕률을 외피로 공동체적 규제와 부조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유형원의 향약은 도회(읍)-사사회(면)의 조직 예하에 동계·동약 등 촌락단위의 자율적인 조직과 결사를 포섭하여 성리

46) 『磻溪隨錄』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47) 『磻溪隨錄』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학적 도덕률로 분식된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민 상호간의 부조적 보험을 강화하고 교화의 일상화를 도모했다. 여기에는 향촌 사회 내부의 자율적 운영원리가 인정되는 가운데 관의 행정적 통제가 일정하게 가해졌다. 이 또한 지역내부의 안정적 교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시 관행을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이었다. ‘士類’는 관과의 협력 하에 교화를 주도하는 그룹으로 지목되었다.

Ⅲ. 學制改編과 貢舉制의 실시

유형원은 향약을 통해 향촌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교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인재양성의 저변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제와 관료 선발 체제를 새롭게 확립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官學과 科擧制가 인재양성과 관료수급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⁴⁸⁾ 조선왕조의 관학은 관료를 양성, 선발하기 위한 기관으로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정점으로 서울에 4학, 지방에 향교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성균관은 문과를, 4학과 향교는 생원·진사시를 준비하는 기관이었다. 무관 양성은 訓練院이 담당했다. 그밖에 譯學·醫學·陰陽學·律學·樂學·書學 등이 있었다.⁴⁹⁾

소과에 합격한 生員·進士는 上齋生으로 성균관에 입학하여 일종의 출석점수인 원점 300을 따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외에 四學이나 향교에서 陞補試를 거쳐 들어온 下齋生(또는 寄齋生)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생원·진사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상재생으로 들어오는 생원·진사가 점차 줄어들자 문과 鄉試·漢城試에 한번 합격한 사람이나 생원·진사시의 향시·한성시에 두 번 합격한 사람, 현직관

48) 『磻溪隨錄』卷9, 敎選之制 上 學校事目

49) 유형원의 잡과교육 개혁안에 대해서는 전도웅, 1998, 「반계의 잡학 및 잡과제도 구상」 『인문사회과학연구』 1 ; 우현정, 2013, 「유형원의 잡학교육개혁론 재고-잡과방목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3-2 참조

료들도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은 전원 학비가 면제되고 숙식이 제공되었는데 이 비용은 왕조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⁵⁰⁾

하지만 16세기에 접어들어 성균관은 정원이 크게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고 재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의도 크게 떨어졌다. 서울 문벌가문의 자제들은 南行을 통하거나 잦은 文科別試에 요행수로 합격하여 조기에 관료에 나아가려는 경우가 많았다. 성균관 師儒職도 기피대상이 되어 점차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채워졌다.⁵¹⁾ 양반들도 일반양인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아 향교입학을 기피하고 私學에서 과거준비를 하는 것을 선호했다.⁵²⁾

지방의 향교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향교의 교관은 한 직으로 간주되어 기피대상이었던 데다가 17세기에 접어들면 아예 파견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향교는 靑衿錄에 入錄된 사족대표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校任은 수령의 재가를 받아 사족들이 선출하였다.⁵³⁾ 향교의 재정도 넉넉지 않았다. 향교 입학은 지역 사족의 천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입학한 유생들은 공부보다 이권 다툼에만 몰두했고 평민 교생은 해당 고을의 각종 잡무에 동원되었다.⁵⁴⁾ 특히 額外校生·西齋生이나 物納校生の 명목으로 피역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校生에 대한 考講도 형식화되었다. 여기에 향교수리·진휼 등

50) 이성무, 2000,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51) 신혜순, 1999, 「16세기 성균관 교육의 침체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사연구』 106

52) 정만조, 1998, 「조선후기의 향촌교학진흥책에 대한 검토」 『한국학논총』 10, 국민대. 科擧를 거치지 않은 ‘門蔭子弟’나 ‘隱逸之士’를 임명하는 南行 또한 중요한 入仕路로 왕조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임민혁, 2002 『조선시대 읍관 연구』, 한성대출판부 참조

53) 윤희면, 1990,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52~156쪽. 조선전기 향교에 대해서는 이성무, 1969, 「조선초기의 향교」 『이상옥박사회갑기념논문집』; 이법직, 1976, 「조선전기의 유학교육과 향교의 기능」 『역사교육』 20; 이법직, 1976, 「조선전기의 교생신분」 『한국사론』 3 참조

54) 전경목, 2003, 「향교의 개혁안과 수령권의 강화」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갖가지 명목으로 대민수탈을 자행하여 향교로서 본래의 기능조차 무색해질 지경이었다.⁵⁵⁾

이같이 성균관과 향교로 대표되는 관학은 재정적 부담, 교관직 기피, 수차례의 士禍 등을 이유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방 사족은 유향소·향약·사창 등 향촌자치조직을 강화해 나갔고 그 일환으로 대두한 것이 書院으로 대표되는 私學이었다. 사림파는 書齋·書堂·精舍 등을 지어 스스로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으로 삼았고 한편으로는 先賢奉祀를 위한 祠宇가 세워졌다. 서원은 이러한 지방 사학과 사우가 결합된 것이었다.⁵⁶⁾ 관학이 침체한 상황에서 왕조정부가 私學에서 육성한 인재를 과거를 통해 뽑아 쓰는 방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관학은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다. 유형원이 대대적인 학제 개편을 구상했던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이같은 관학의 침체라는 현실이 놓여 있었다.

유형원은 당시 과거제가 관료선발제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학문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과거의 해독'으로 선비들은 공부나 인격 수양보다 '깍데기에 불과한 글을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몰두할 뿐'이었고 文詞 자체도 '용렬하고 자질구레해서 말이 줄거리를 이루지 못하고 뜻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험관(考官)은 무책임해지고 응시자도 요행만 노려 우수한 인재 선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⁵⁷⁾ 당시 활발히 세워지고 있던 서원도 문제가

55) 송찬식, 1976, 「조선후기 교원생고」 『국민대논문집』 11

56) 정만조, 1975,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한국사론』 2 ; 이성무, 1967, 「선초의 성균관 연구」 『역사학보』 35·36합집

57)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실제로 과거응시자들이 科文을 익히는 전범으로 다양한 종류의 번려문 선집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식의 『儷文畧選』, 김석주의 『儷文抄』, 유근의 『儷文註釋』, 김진규의 『儷文集成』 등이 대표적이다. 東表라는 이름의 표문에 대한 모범 답안집도 다수 만들어지고 講經을 위해 경서의 문단을 나누어 한 글자씩 뽑아 이야기를 만들어 쉽게 기억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수험준비 방법이 개발되었다. 각종 수험준비서나 방법은 누대에 걸쳐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후손들은 이를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書院은 본래 선비들의 수양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지역의 鄉賢이 있으면 인하여 제사를 지내 報德表式의 바탕으로 삼았을 뿐 제사만을 위해 설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近世에 왕왕 제사만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 있었는데 당론이 풍습을 이룬 뒤부터는 제사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제사를 지내면서 다투어 서원을 설치하는 자가 많게 되었다.⁵⁸⁾

새롭게 교육기능을 떠안은 서원도 당쟁이 격화됨에 따라 제향기능만 가지거나 격에 맞지 않는 인물을 모시는 등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어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쟁의 격화를 배경으로 양반층은 혈연·학파·지역별로 연결되어 상호간의 결속과 유대관계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다투어 서원·사우를 건립하였다. 서원은 정치적으로 향촌의 사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차적 거점이 되었고 문중내부의 顯祖에 대한 제향을 통한 별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유지, 교육·교화를 통한 문중내 윤리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이 때문에 後孫·門人·鄉人 등 대부분 피봉사인과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 의해 건립되었다. 숙종조에 이르면 파악된 서원의 총수만도 680개가 넘었다.⁵⁹⁾ 왕조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도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심지어 先祖가 지은 문장을 답안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과거 준비에 초점을 맞춘 공부 방법은 요행을 바라는 말 폐적 현상으로 비판되었지만 유생들의 입장에서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다할 리 없었다. 이와 같이 17세기에는 응시가 보다 용이한 증광시나 정시가 자주 설행되었고 고시 과목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수험서와 수험방법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충분히 학문적 자질을 연마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거응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挾書·代述·借述·符同易書 등 부정행위도 만연했다. 이 모든 것은 과거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수험생들은 요행을 노리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박헌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83~85쪽).

58)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學校事目

59) 정만조, 1975, 앞의 글 ; 정만조, 1989,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담없이 私學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한 인재를 관료로 뽑아 쓰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유형원은 ‘덕 있는 사람의 글은 神과 사람을 화합케 하여 永世의 모범을 드리우는 것’으로 ‘이러한 글은 君子儒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고 결코 科擧의 무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거제로 인한 ‘文詞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심이 虛浪하고 풍속이 野薄하여 아래로 빈말을 꾸며 만드는 文詞에 이르기까지 또한 날로 용렬하고 저급함에 나아가는 것은 科擧의 해독이 아닌 것이 없다. 마땅히 모두 혁파하고 貢擧制로 명백한 법령을 정하여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다스려질 날이 없고 만세가 캄캄한 긴 밤과 같이 될 것이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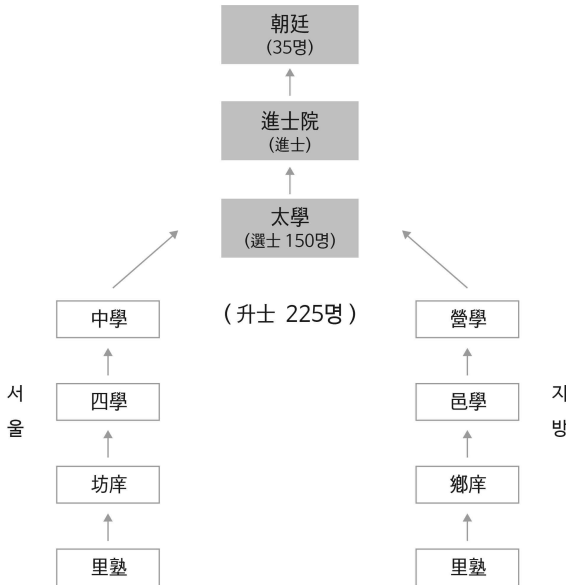
인심과 풍속이 야박해지고 문사도 결만 그럴 듯하게 꾸미는 데 치중하는 등 시속이 타락한 것은 모두 과거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력한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貢擧制였다. 공거제를 실시한다면 ‘자연스럽게 士風에 기강이 서서 폐단이 점차 없어질’ 터였다.⁶¹⁾ 공거제에 규정된 각급학교의 진학기준과 관료로 나아가는 경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 <그림 3>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유형원이 구상한 공거제의 맨 밑에는 面 단위의 鄉庠·鄉學(서울은 坊庠)과 里 단위의 里塾이 있었다. 鄉庠은 ‘鄉中’에서 기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립하면 수령이 인근의 頃夫와 原稅 20곡의 公田에 대한 면세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鄉庠의 學長은 해당 鄉(面)의 추천을 받아 관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오직 學識을 기준으로 은퇴한 관료나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령은 학장을 예우하고 성과가 있으면 포상하도록 하였다. 유형원은 鄉庠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공거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건립이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으로 보았다.⁶²⁾ 里塾은 당시 서당과 비슷한 형태였

60)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擧事目

61)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學校事目

62)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擧事目. 鄉庠은 중당 3칸, 좌우에 재실이 각

〈그림 3〉 공거제의 운영체계



던 것으로 생각된다. 향약이 읍단위로 운영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향약과 이속은 향약의 체계 속에서 지방관의 협조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리라 짐작된다.

鄉庠과 里塾에서 '학문에 뜻을 둔 사족의 자제'와 '재능 있는 일반백성'은 15세가 넘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邑學과 四學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 때가 실질적으로 공거제에 진입하는 단계로 읍학과 사학의 재학생은 '士'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학생이자 관료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⁶³⁾ 진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단계야말로 향약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 공간에서 국가적 차원의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士와 民의 분기가 일어나는 지점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뒤에서 상술).

선발절차는 수령과 교관(서울은 四부의 교관)이 주관하였다. 읍학의 학생에 결원이 생기면 매년 봄·가을 석전제 한두 달 전 지원자의 스승, 마을의 장로나 親長·父兄 등이 입학을 요청하는 단자를 제출

2간, 부익과 창고 2간 정도로 가급적 사창소재지에 세우고 서원이 있는 곳은 이를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63)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學校事目

하였다(본인 제출도 허용). 지원자는 학교 인근의 學村이나 外舍에 머무르면서 師長이 주재하는 『소학』과 四書의 考講을 통과해야 입학이 허가되었다. 일반민(庶人)은 입학에 아무 제약이 없었으나 工商·市井·무당·雜類·공사친 등은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입생들은 外舍에 머물렀기 때문에 外舍生(또는 增廣生이나 額外生)이라 했고 公田 2頃에 대한 保布가 면제되었다. 外舍에 들어온 지 1년이 경과한 후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재주와 행실이 있고 학문에 힘쓰는 자'를 뽑아, 『小學』·四書·『近思錄』·六經 중 택일, 고강하여 합격하면 內舍에 들어갈 수 있었다. 內舍生(額內生)이 되면 공전 4경의 보포를 면제받았다.⁶⁴⁾ 수령은 邑學의 학생들을 예우하고 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鄉官·將官 등의 직임을 맡기지 말도록 하였다.⁶⁵⁾

교관은 학생의 학업을 독려하여 5일 단위로 통독 강론하고 매달 1일과 15일 고강을 실시하였다. 고강은 상·중·하 세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不通者는 楚撻하였다. 매년 봄가을 서울은 司敎(中學의 師長), 지방은 감사가 각기 四學과 邑學을 돌면서 교관·학생 등과 함께 學校法을 읽고 고강과 활쏘기를 실시하였다. 감사는 매년 봄·가을 교관의 성적을 考査하여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경우 포상한 후 상위 직임으로 발탁하고 직무에 태만한 자는 해당인은 물론 그 舉主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였다. 임기가 차면 실적에 따라 승진되었다. 製述은 춘하추동 4차례 실시하였는데 詩·賦·表를 없애고 경서와 諸子·史論·時務策을 위주로 義·論·策을 간결하게 짓도록 하였다. 이 때 鄉射禮를 함께 행하고 글씨도 평가하였다.⁶⁶⁾

64)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65)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66)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유형원은 활쏘기를 특히 중시하였다. 유형원은 원래 文과 武는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文事에 임하면 유건을 쓰고 武事에 임하면 군복을 입을 뿐이라고 하면서 '유생이 한번 활과 화살을 잡으면 다시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 말뼀 중의 말뼀'이라고 비판하였다. 문무겸전의 강조는 그가 관계개혁을 통해 官階와 공거제 운용에 문무구분을 없

유생들은 5개 번으로 나누어 15일씩 학교에 기숙하였다. 60명이 정원이라면 번당 12명 5개 번차로 나누어 매달 1일과 15일 교대하였고(40세 이상자 免番), 당번생에게는 公糧이 제공되었다. 당번임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1년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처벌하였다.⁶⁷⁾ 학생 자치조직도 있었다. 여러 유생 가운데 ‘衆議가 추천하고 敬服하는 나 이 많고 優秀特異한 자’ 1인을 掌議로 삼고 그 밑에 有司(2인·임기 1년), 直月(2인·임기 1년)을 두도록 하였다.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장의가 학장에게 보고하였다. 유사는 물품의 출납과 하인을 부리는 일, 서책이나 비품 등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다음은 營學과 中學이다. 四學과 邑學의 재학생은 3년을 修學한 후 상급학교인 中學과 營學에 진학할 수 있었다. 式年의 9월 서울은 四學에서 中學, 지방은 邑學에서 營學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大比’가 실시되었다. 경기 지역은 별도로 영학을 세우지 않고 서울의 中學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⁶⁸⁾ 서울의 사학은 교관의 長과 貳官, 지방 읍학은 수령과 교관이 그 ‘德行과 道藝’를 살펴 선발을 논의하였다. 수령과 교관은 평소 향약과 학규에 규정된 ‘덕업과실’과 재능·학문의 우열을 考査하되 ‘衆議의 公論’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 기준은 ‘행실이 향리에 나타나고(行著鄉里)’ ‘학문이 경술에 밝으며(學明經術)’ ‘재주가 일을 맡길 만 한 것(材能可任)’ 세 가지였다. 정기적으로 실시한 고강과 제술에 대한 평가는 참고자료에 그칠 뿐이었다. 학생의 진학이란 ‘문자에 구두나 짚고 門地의 귀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현능한 사실만을 가지고 하’도록 했다. 大比가 끝난 후에는 1~3명 정도의 천거 대상자를 주빈으로 지역의 장로, 학교의 여러 인사들과 함께 향음주례를 베풀었다. 일종의 축하연인 셈이다. 향음주

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학생은 물론 교관이나 수령도 틈틈이 활쏘기를 연마하고 특히 고강을 통해 선발한 학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활쏘기를 통해 우열을 가리도록 하였다. 유형원의 관제개편론에 대해서는 송양섭, 2018, 『관계 유형원의 관제개편구상』 『조선시대사학보』 86 참조

67) 『磻溪隨錄』 卷10, 教選之制 下 貢舉事目

68)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學校事目

레 다음날 천거대상자들은 舉狀을 가진 아전과 함께 중학이나 영학으로 떠났다.⁶⁹⁾

四學과 邑學에서 천거된 升士가 營學(지방)과 中學(서울)에 오면 각각 司敎와 監司의 주관 하에 상견례와 고강을 실시했다. 입학생은 四書, 六經, 『近思錄』을 5일 간격으로 通讀·講論하고 매월 1일 학교 법을 읽으며 분기마다 글씨와 활쏘기를 考査하도록 하였다. 봄가을에는 강독을 考査하였다. 승사 중 학업이나 행실이 부적절한 인물은 원 지역으로 돌려보내고 해당인을 선발한 교관과 수령을 처벌하도록 하였다.⁷⁰⁾ 升士에게는 청결하고 넉넉한 숙식이 제공되었고 통학도 허용했다. 의무적으로 학교에 있어야하는 番次도 없었다. 봄가을에는 전체 학생이 참석하여 제사와 고강·활쏘기를 실시하였다. 무단·장기 결석, 매달 1일과 15일 실시하는 講讀 불참, 3개월을 기준으로 학교에 머문 날이 15일 미만일 경우 징계하였다. 감사와 도사는 정규 행사 외에 틈틈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을 격려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가을이 되면 司敎·監司과 司導·都事가 升士의 德行과 道藝를 살피고 賢能을 가려 太學에 올릴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중학과 영학 재학생은 1년이 지나면 태학에 오를 수 있었다. 이는 앞 단계의 천거 방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선발되지 못한 자는 그대로 營學에 머물러 다음 식년 새로 진입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심사 대상에 올랐다.⁷¹⁾

사실상 최종단계의 교육기관인 태학도 중학·읍학과 마찬가지로 입학생의 상견례와 고강을 행하고 不通者는 돌려보냈다. 입학생은 選士가 되었다. 이들은 최대한 예우받도록 하였고 升士와 마찬가지로

69) 추천장에 해당하는 舉狀에는 천거대상자의 소속 학교, 성명, 나이를 쓰고 천거자의 직역과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성품·행실·학술 등 천거사유를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피천거자가 적임자가 아닐 경우 천거자(舉主)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中學과 營學에서 太學으로, 태학에서 朝廷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쓰는 舉狀도 양식은 대동소이했다(『磻溪隨錄』卷9, 敎選之制 上 學校事目).

70) 『磻溪隨錄』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71) 『磻溪隨錄』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로 番을 나누어 학교에 머물 필요가 없었다. 이들도 5일 1회 通讀, 매 달 1일 학교법 강독, 四時 활쏘기, 春秋 考講 등을 실시하였다. 학문이나 행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돌려보내고 해당자를 추천한 中學의 長·貳官이나 營學의 監司·都事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대학의 장·이관은 매년 가을 選士 가운데 '性行이 단정하고 엄치와 禮讓이 있고 학업을 밝게 통하고 나라 다스리는 도를 통달한 자'를 선발하여 朝廷에 올렸다. 탈락자는 다시 태학에 머물러 공부하였다.⁷²⁾ 조정에 올라온 사람은 大臣이 命官이 되고 당상관 1명, 6조 당상관 각 1명, 홍문관 사헌부 관원 각 1명이 모여앉아 고강을 실시하였다. 고강 방식은 태학과 같지만 과목에 『綱目』과 『經國大典』이 추가되었다. 고강을 통과하면 進士가 되어 進士院에 들어갔다.⁷³⁾

進士院은 의정부와 이조·병조가 주관하였다. 이들은 入直하여 궁궐의 숙위를 하고 국왕의 소대에 응하였다.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물리치고 대학의 장과 이관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진사는 직임도 없고 정원도 없으며 3번으로 나누어 입직하고 四時 강독과 활쏘기를 하였다. 이들에게는 조희의 侍衛나 제사의 집사 담당, 經筵과 輪對 참석 등 여러 가지 임무가 부여되었다. 1년이 경과하면 이들에게 7~9품의 직이 부여되었다. 우수한 인물은 6품 이상 관직에 임명하고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職品에 제한이 없었다.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연령은 40세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40세는 고제에서 인격적으

72) 『礪溪隨錄』卷10, 教選之制 下 貢舉事目. 유형원은 策問을 관료선발의 평가요소로 넣는 것은 반대하였다. 글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학문적 수준이 잘 드러나지만 글의 형식에 매달리게 되면 문장을 화려하게 만드는데 치중하여 글쓰기의 본질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년간 수행한 업무, 말과 주장, 일의 추진과 응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하루만에 작성한 답안지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책문을 통해 시험을 한다면 초학자들조차 글을 돌려가며 베끼고 모방하는 것을 일삼을 뿐 아니라 주현에서 천거하는 것도 文詞를 우선으로 삼을 것이므로 커다란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 또한 과거제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과거제가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과제였다.

73) 『礪溪隨錄』卷10, 教選之制 下 貢舉事目

로 완성단계에 접어드는 시기로 운위되는데다가 관료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차단막의 성격도 강했다. 물론 탁월한 학문과 인격의 소유자로 판단될 경우 연령에 구애 없이 別薦을 통해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놓았다.⁷⁴⁾

각급 학교의 단계 마다 추천과 선발의 주관자들에게는 권한과 함께 책임도 따랐다. 수령과 교관이 적당한 인재를 추천하지 않으면 감사가 보고하여 파직시키고 부적절한 자나 사적인 연줄로 추천한 경우에는 천거한 사람(舉主)을 징계하도록 하였다. 사교와 감사가 동일한 과오를 저질렀다면 태학에서, 태학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조정에서 처벌하고 현능한 자를 천거한 경우에는 論賞하도록 하였다.⁷⁵⁾ 천거한 사람도 피천거자가 부적격한 인물일 경우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피천거자도 함부로 나설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끼어 들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⁷⁶⁾

74) 『磻溪隨錄』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공거제의 인재선발 방식도 기본적으로 천거제의 한 형태지만 유형원은 別薦의 방식으로 공거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두고자 했다. 중앙의 3품 이상 관료와 ‘近侍賢儒’은 ‘선왕의 도에 밝고 덕업을 충분히 갖추어 넉넉히 사표가 될 만 한 자(明先王之道德業充備足爲師表者)’와 ‘뜻이 돈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재주가 어질고 행실이 잘 닦인 자(篤志好學材良行脩者)’를 찾아 왕에게 추천하도록 하였다. 지방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수령과 읍학이 인재를 천거하면 감사를 거쳐 이조가 심사하여 적당한 직임을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머무를 처소가 주어졌고 왕의 소대에 응하여 治道와 학술을 강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 가운데 우수한 사람은 고위관료로 임용하고 학업과 덕행이 출중한 사람은 태학의 스승이나 각급 학교의 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磻溪隨錄』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하지만 천거제가 단순히 고제의 이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천거제는 국초 이래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이거나 실시되고 있었고 유형원도 일정하게 이러한 현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구상을 가다듬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천거제에 대해서는 정구선, 1995, 『조선시대 천거제도연구』, 초록배 참조

75) 『磻溪隨錄』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76) 『磻溪隨錄』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표 1〉 각급학교의 직임과 학생정원

각급학교	長	教官	정원(명)	
			내사생	외사생
太學	大司成(정2품)	司成(정3품)	150	
中學	司教(정3품당상)	司導(중3품)	225	
營學	監司(長) 參理 또는 都事(貳官)	參理(都事 : 중3품)		
四學	(不明)	教導(중4품) 教授(중6품)	각100	각200
邑學	大府·都護府學	教導(정5품)	80	160
	府學	教導(중5품)	60	120
	郡學	教授(정6품)	40	80
	縣學	教授(중6품)	20	40

*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學校事目 ; 『磻溪隨錄』 卷1, 田制 上 「分田定稅節目

유형원은 각급 교육기관별로 그 책임자와 교관, 그리고 학생의 정원을 규정하였다. 태학의 長과 貳官은 '도덕이 높아서 스승으로 삼을 만한 자'를 임명하고 이조판서와 대제학은 知館事를 겸하도록 하였다. 大司成은 정2품, 司成은 정3품으로 올리도록 하였다. 중학·영학은 사교와 감사, 그 아랫단계인 읍학은 수령이 책임자였다(四學은 불분명). 실질적인 교육을 맡은 교관에는 가급적 해당 군현이나 인근 군현의 '학업이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를 임명하되 처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였다.⁷⁷⁾ 教官은 수령이 客禮로 예우하도록 하고 망궐례와 유생고강 외에 어떤 公事도 출석이 면제되었다. 당시 교수·훈도 등 교관에 대한 기피와 자질 저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다.⁷⁸⁾ 學賓이 있을 경우 하인이 배정되었고 읍학·사학에 입학하는 내사생과 외사생(증광생)의 정원은 2:1 비율로 책정되었다.⁷⁹⁾

당시 사학의 학생 정원은 각 100명이었고 향교의 정원도 府州 90명, 都護府 70명, 郡 50명, 縣 3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 유형원이 설정한 내·외사생 정원은 2~3배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시 향교의 서재생은 입속의 제한이 없어 엄청난 인원이 몰려

77)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學校事目

78) 『磻溪隨錄』 卷10, 教選之制 下 貢舉事目

79)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學校事目

드는 상황이었다.⁸⁰⁾ 유형원의 방안은 당시 방만하게 운영되던 향교·사학의 入屬 정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해 관료선발과 교화진작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관료예비군 풀(pool)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성균관·향교 등 官學이 직면한 주된 문제는 대부분 궁핍한 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예컨대 2,500여 결에 달하는 성균관 學田으로부터의 수입은 부족하기 십상이어서 기숙 유생수를 줄이거나 토지를 추가로 내려주는 실정이었다. 성균관의 油炭·鋪陳·席子·地衣 등 물품은 노비신공으로 충당하였지만 이 또한 다른 기관으로 자주 轉屬되어 재정은 갈수록 부실해져 갔다.⁸¹⁾ 향교도 마찬가지였다. 鄕校位田으로부터의 수입이 불안정했던 데다가 확보된 세수도 향교재정에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위전에 대한 양반의 冒占도 향교 재정을 잠먹는 요인 중 하나였다.⁸²⁾

〈표 2〉 각급학교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배정

구분	賜稅田	交款祿俸 (월급)	紙地鋪陳 雜物價米	합(곡)	儒生 公糧	僕隸						
						書吏	皂隸	小史	合	歲米	田	加給田
太學						9	96	63	168			
進士院						3	12	30	45			
中學						6	36	18	60			
四學						각3	각42	각30	각75			
營學							24	28				
大都護府學	480				345.6	2	58	42	102	1,185.6	51	10
府學	370	150(12.5)	14	164(109.5)	259.2	2	50	34	86	1,010.8	43	8
郡學	260	132(11)	12	144(96)	172.8	2	42	26	70	838.0	35	7
縣學	150	120(10)	10	130(86)	86.4	2	36	18	56	694.4	28	5

* 자료: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學校事目; 『磻溪隨錄』 卷19, 祿制 各道州縣學鎮驛吏隸祿田定數.

** 賜稅田·敎官祿俸·紙地鋪陳雜物價米·儒生公糧·歲米의 단위는 斛(10두)이며 田과 加給田의 단위는 頃이다.

80) 송찬식, 1976, 앞의 글.

81) 이상무, 1967, 앞의 글, 263쪽

82) 윤희면, 1990, 앞의 책, ; 전경목, 2003 앞의 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유형원이 제시한 방안도 공전 분급과 '經費'의 책정을 통한 각급 학교 재정의 안정적 수급이었다.⁸³⁾ <표 2>는 각급 학교 별로 책정된 賜稅田·紙地鋪陳雜物價米·교관녹봉 등 각종 운영비와 인건비의 항목별 액수를 나타낸 것이다. 포에서 보듯 서울의 太學·進士院·中學·四學, 지방의 營學에 대해서는 太學·營學의 儒士의 식사와 갖가지 需用을 經費에서 會減하여 지출하도록 했을 뿐 사세전을 비롯한 여타 항목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반면 대도호부학·부학·군학·현학 등 邑學과 관련된 항목은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 이는 유형원이 구상한 공거제 체계의 기간을 이루는 학제의 단계가 바로 읍학임을 잘 보여준다. 군현 단위로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었던 읍학이야말로 밑으로부터 축적된 교화의 성과를 위로부터의 관료선발제로 적절히 흡인해내기 위한 관료예비군 양성의 전국적 거점으로 교선의 이념 실현을 위해 유형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단계인 서울의 사학이나 그 바로 윗 단계인 영학·중학, 그리고 태학은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재정이나 인력의 활용이 용이했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듯 하다. 재정이나 인력의 배치라는 측면에서 공거제 운영의 주안점은 실질적인 교육과 인재선발의 기저를 이루는 읍학에 두어졌던 것이다.

읍학에는 일단 賜稅田을 배정했다. 사세전은 '學中公需'를 충당하고 약간의 잉여를 흉년에 대비한 예비재정으로 남기도록 했다. 官員·有司의 私用은 금지되었다.⁸⁴⁾ 교관의 녹봉과 유생에게 제공되는 소금·장·어물·채소·등유, 學賓의 식사비용, 大祭때의 식사비, 서책·종이·붓·器用, 재실의 鋪陳 따위의 지출항목, 紙地鋪陳雜物價米가

83) 유형원의 공전제와 국가재정개혁에 대해서는 송양섭, 2013, 앞의 글 ; 송양섭, 2018,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개혁 개혁구상과 녹봉제실시론」(한국실학학회 발표문) 참조

84) 사세전은 아록전·공수전 등과 같이 民田에 수세하는 各自收稅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수조권 부여라는 성격이 띠었다. 이에 대해서는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왕실재정 개혁구상」 『역사와 담론』 64에 상세하다.

유품에 따라 책정되었다. 유생에 대한 公糧은 1인당 두 끼를 기준으로 1일 2승이 책정되었는데 이들이 5番禺으로 나누어 1번 당 12인씩 15일 학교에 들어왔으므로 月糧米는 7곡 2두로 산정되었다(常供). 당번이 아니면서 학교에 머무는 자는 公糧이 제공되지 않았다. 잡무를 담당할 서리·조예·소사가 배정되었고 이들에게는 녹봉과 거주지가 제공되었다.⁸⁵⁾

공거제를 통한 학제운영과 관료충원의 장기추세는 어떠했을까? 유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컨대, 子年을 式年으로 삼을 경우, 그 해 가을 四學과 邑學에서 225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각각 中學과 營學에 올라가고 이듬해인 丑年에 중학과 영학의 升士 225명 중 150명이 추려져 太學에 진입하였다. 충청도 영학을 예로 들면 升士 30명 가운데 태학으로 올라가는 선사가 20명이므로 식년마다 10명의 탈락자가 생기는 셈이었다. 7식년(21년)이 되면 탈락자의 누계가 70명이므로 8식년째는 신규 진입한 승사 30명을 여기에 합해 총 100명이 되었다. 이들 100명 중 20명이 선사로 태학에 진학했다. 이 또한 7~8식년(21~24년)을 하나의 주기로 보면 더 이상 재학생의 증가는 없다고 해도 좋았다.⁸⁶⁾ 다음 해인 寅年에는 태학의 選士 150명 가운데 선발된 35명이 朝廷에 올라가 관원에 임용되었다. 태학의 선사는 매년 선발되므로 3년 누적 인원이 105명이 되었다.⁸⁷⁾

매년 조정에 올라가는 35명의 인원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관원의 수급이 이루어졌다. 40세에 임명된 관료가 70세 무렵 은퇴할 경우, 최대 30년 정도 재직하는 셈이지만 실제로 이를 채우는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900여 개의 관직을 20여 년으로 나누면 매년 3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은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갖가지 사유로 이보다 많은 인원이 관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신규발령 관원 35명과 은퇴하는 관원의 수는 서로 엇비슷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매년 관원 35명을

85)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86)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87)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신규 발령하여 20여 년이 지나도 누적인원은 700여 명 정도였다. 나머지 200개 정도의 관직은 공거제 외에 別薦, 陞遷 鄉官, 武選 升士 등에 의해 채워졌다. 전체 900여 개의 관직은 결원과 수급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면서 대략의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 것이 운영의 핵심이었다.⁸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유형원이 제시한 공거제는 향약을 통해 교화의 토대를 구축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제와 관료선발 체제를 연계시킨 것이었다. 여기에는 官學의 침제와 科擧制의 모순으로 교육과 관료선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유형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공거제는 향촌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된 里塾이나 坊庠·鄉庠을 기반삼아 邑學(지방)·四學(서울)의 3년 과정을 거쳐 營學(지방)·中學(서울)에서 1년 수학한 후, 최고 교육기관인 太學에 입학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공적인 학제는 읍학과 사학에서 사실상 시작되었으며 이 단계야말로 밑으로부터 축적된 교화의 성과를 위로부터의 관료선발제로 적절히 흡인해내기 위한 관료예비군 양성의 전국적인 거점이자 士民의 分岐가 일어나는 지점이었다. 단계별 상급학교 진학기준은 지역사회 및 각급학교의 '衆議'·'公論'이었고 고강·제술성적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았다. 태학 재학생 중 일부가 선발되어 進士院에 들어갔고 이들 進士는 인품과 실무능력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관직에 임명되었다. 각급학교의 교관과 학생의 정원도 정해져 당시 방만하게 운영되던

88) 『磻溪隨錄』 卷10, 教選之制 下 貢擧事目. 유형원은 이를 수치를 들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태학 정원 150명 중 3년 단위로 105명 선발하면 이 때 45명의 탈락자가 남는데 이들이 7식년(21년)이 되면 누적인원이 315명이 된다. 다시 한 식년이 지나면 이들 315명과 신규진입 150명을 합하여 총 465명이 되는데 이들 가운데 3년에 105명이 선발되어 조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셈이었다. 유형원은 학제와 관료충원의 주기를 24년(8식년)으로 상정하였는데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8식년×105명=840명의 관료가 배출되지만 질병·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은퇴자를 30여 명으로 가정한다면 3년에 100명 남짓으로 새로 조정에 들어오는 105명과 서로 엇비슷해 관료수급체계는 원활히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관학입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였고 운영을 위한 재정도 公田과 經費에 의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유형원은 장기예측을 통해 공거제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제운영과 관료층원에 오작동이나 과부족이 없을 것임을 증명하였다. 敎選論에 기반한 貢舉制 구상은 향촌사회의 공동규약과 학제를 함께 편제하여 공동체적 화합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단계별 각급학교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시킴으로써 體制敎學의 전파와 지배 엘리트의 재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배구상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IV. 貢舉制와 ‘敎選’의 지향

향약을 통한 교화의 저변 위에 학제인 동시에 관료선발제로 구축된 공거제가 당대의 현실에 비추어 하나의 제도론으로 어떠한 위상과 지향을 가지고 있을까? 유형원의 구상이 철저하게 당대 제도운영이 보여주는 현실에 규정되었던 만큼 그 맥락도 이를 바탕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 당시 교학체제 쇄신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체로 지방관의 주도와 사족의 참여를 통하여 면리 단위로 학교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鄕校·國學과 연계하는 방안이 대세였다.⁸⁹⁾ 이것이 과거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비롯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인재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 것이 바로 薦舉制였다. 천거제는 부분적으로 제도화된 상태였고 16세기 사림파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림파는 문예·문장에 의해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가 德行이라는 요소를 검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천거제의 확대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들은 公論에 입각한 공정한 인재선발을 주장하면서 천거제의 일종인 保舉制를 관철시키고 강화된 연권

89) 정만조, 1988, 앞의 글

과 낭관권을 토대로 천거인을 활발히 서용해 나갔다.⁹⁰⁾

천거제는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했으나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부활했고 낭천제를 통해 낭관권 하에 통합되어 인재등용의 새로운 방법으로 정립되었다. 17세기에 접어들어 천거제는 山林職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배경으로 천거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조야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⁹¹⁾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공거제가 현실에 적용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장단점은 좀 더 따져 봐야할 문제지만 제도운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절차와 운영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유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의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사사롭기 어렵고 혼자 보면 사사롭기 쉬우며 실상을 責하면 사사롭기 어렵고 거짓으로 하면 사사롭

90) 이러한 유형원의 구상은 그 골격의 상당부분을 이이의 주장에서 차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이는 당시 과거제가 文藝만 중시하고 德義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훌륭한 덕망을 지니고 있어도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관리로 등용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천거제의 활용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매년 전국의 생원·진사·유학 중 道學을 숭상하는 사람을 가려 이조와 예조에 보내면 이 가운데 생원·진사 200명과 유학 200명은 각각 성균관과 사학에 적을 둔 ‘選士’로 삼아 교육시키는 방안이었다. 성균관의 圓點制는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 선비 중 道義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處士로 발탁, 실직을 주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관료선발의 기준은 글쓰기가 아닌 德義로 지칭되는 종합적인 품성이었다. 지방 향교의 학생은 젊은 사람으로 채우고 나이 많고 재능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정원 외의 유생 중 부적합자는 모두 군역에 충당하도록 하였다(이선민, 1988 『이이의 경장론』 『한국사론』 18). 앞에서 언급했지만 유형원의 구상은 이같은 이이의 문제의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敎選의 이념을 통해 古制의 이상과 제도운영의 현실을 종합하여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91) 최이돈, 2010, 「16세기 사림파의 천거제 강화운동」 『한국학보』 54 ; 최이돈, 1996, 「천거제의 시행과 관료충원방식의 변화」 『한국사』 30. 중국 천거제는 한의 鄉舉里薦으로 시작되어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金翰奎, 1977, 「西漢의 求賢과 文學之士」 『歷史學報』 75·76 ; 申採湜, 1981, 『宋代官僚制研究』, 삼영사 ; 福井重雅, 1988, 『漢代官吏登用制度の研究』, 創文社 ; 김동인, 1994, 「察舉制의 이념과 실제」 『교육사학연구』 5 참조

기 쉬우며 투명하게 하면 사사롭고 은밀히 하면 사사롭기 쉬우며 오랜 시간을 거치면 사사롭기 어렵고 잠깐 동안이면 사사롭기 쉽다. 공거제는 鄉黨公共之論을 널리 수렴하고 평소 善惡의 실상을 따져 공개적으로 천거하여 여러 사람을 모아 禮가 흥하고 임용함을 보증하여 오랫동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과거제는 모조리 이와 반대이니 이것으로 본다면 공거제가 사사로움을 용납하기 쉬운가? 과거제가 사사로움을 용납하기 쉬운가?⁹²⁾

형식적인 글짓기 능력평가만으로는 인품과 실무능력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유형원은 다중에 의한 장기간의 공적인 검증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인재선발 방식이며 그 현실적인 방안은 다름 아닌 ‘鄉黨公共之論’을 널리 수렴하고 평소의 행실을 관찰하여 공정하게 천거하는 공거제라는 것이다. 유형원의 개혁안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공’은 학제와 인재선발 과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³⁾ 이같이 유형원의 공거제는 당시 과거제 비판이 비등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사림파의 천거제 실시론을 충실히 계승, 단계별·층위별 公論을 통한 다중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선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유형원의 공거제는 당시 다수의 논자들에 의해 폭넓게 제기되던 관학진흥책의 한 갈래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라 해도 좋았다.

유형원의 공거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지향은 당시 복잡하게 운영되었던 교육제도와 기구를 국가차원의 공적인 학제로 단일화한 위에 관료선발 기능을 연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방안이었다는 점

92)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93) 조선왕조의 ‘공’은 가족→촌락→군현→국가의 각 층위별로 공과 사가 전변하는 동심원꼴의 복잡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유형원이 궁극적으로 중시한 것은 국가 단위의 ‘공’이었지만 그 아래 층위의 범주에서도 ‘공’은 여전히 중요한 운영원리로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형원 국가론의 공적 성격과 조선왕조 공 개념의 중층성에 대해서는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공’이념과 이상국가론」 『조선시대사학보』 64 참조

이다. 바로 '教選'의 제도적 실현이었다. 당시 식년문과는 初試를 통해 240명의 인원을 뽑아 覆試·殿試를 통해 33명을 추려냈는데 응시자는 반드시 향교나 4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없었다. 왕조의 과거제가 鄉校와 四學에서 양성한 인재를 생원·진사시로 뽑아 성균관을 거쳐 문과에 응시하도록 한 것은 학제와 관료선발제를 연계시키고자 한 노력의 소산이었지만 문과 초시에는 생원·진사 외에 幼學에게도 응시자격이 부여되어 대다수의 사족들은 관학을 거치지 않고 서원에서 별도로 공부하여 대·소과에 응시하였다. 관학이 침체되고 서원으로 대표되는 私學이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학제와 관료선발체계는 서로 괴리된 채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⁹⁴⁾

공거제에서는 일단 초시단계의 240명과 비슷한 225명의 인재를 중학과 영학 단계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 과거의 소과 1,400명 선발은 坊庠·鄉庠에서 사학·음학으로의 진학 단계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의 인원은 산술적으로 科擧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부·도호부학 7,920명(240명[내사80+외사160]×33개), 부학 3,960명(180명[내사60+외사120]×22개), 군학 7,200명(120명[내사40+외사80]×60개), 현학 1,800명(60명[내사20+외사40]×30개), 서울 四學 1,200명(300명[내사100+외사200]×4개)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총 22,080명에 달했다. 여기에서 營學·中學으로 진학하는 升士 225명이 추려졌다. 대략 98.1:1의 경쟁률로 음학·사학에서 영학·중학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100명에 한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어쨌든 음학·사학에 수용된 2만 명이 넘는 학생집단이야말로 교화·교육을 통해 유지되는 관료예비군의 기초적인 모집단으로 엘리트 선발의 저변을 이루었던 것이다.

다음은 중학·영학의 225명 중 150명이 태학(성균관)에 진학하는 단계로 이는 일원화한 관학체계의 운영을 위해 추가된 절차였다. 太

94) 초시에는 館試·漢城試·鄉試가 있었는데 館試는 성균관의 居齋生에게 원점 30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50명을 선발했고 한성시는 서울의 유생과 현직관료를 대상으로 46명을 뽑았다. 향시는 150명을 도 단위로 배정하여 試取하였다(이성무, 2004,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

學에 재학하는 150명 중 매년 35명이 선발되어 관료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과거제에서 문과 覆試·殿試를 거쳐 33명을 선발, 순위를 매겨 관직에 임용하는 단계와 유사했다. 식년 문과만 놓고 본다면 3년 1회지만 增廣試·春塘臺試·別試 등 각종 부정기 시험으로 과거는 매년 평균 2회 가까이 실시되다시피 했던 만큼 공거제를 통해 최종 임명되는 관원수는 크게 감축된 셈이었다.⁹⁵⁾ 여기에는 관제개편을 통한 관직수의 대대적 감축이 병행되었으며 유형원 스스로도 이러한 인원수가 당시 科額에 비해 대단히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⁹⁶⁾ 私學인 書院은 자연스레 폐지되었고 관료가 되기 위한 주된 사다리는 공거제로 통일되었다. 이같이 유형원의 공거제는 학제와 별도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관료선발제를 교선의 이념 하에 단계별 학제와 일치시켜 엄격히 운영함으로써 교화의 효과와 우수한 관료엘리트의 선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유형원이 공거제 구상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전국적으로 고른 인재등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화의 균질적 확산이었다. 유형원은 과거합격자의 서울편중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당시 문과 급제자의 분포는 50.4%가 서울에 편중되었고 이 문제는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 내에서도 대응과 그 인근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서 보듯 교육자원이 풍부하고 유학의 보급이 빠른 지역에서 문과급제자 배출이 많았다.⁹⁷⁾ 그러한 점에서 서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이었고 유형원은 관료가 주로 '서울의 세력

95) 조선전기 문과는 연 0.95회로 나타나는 반면 후기로 접어들면 연 1.77회로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庭試·春塘臺試·增廣試·外方別試 등 부정기 시험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었다. 16세기 연 0.9회 실시에 평균 11.5명의 급제자를 배출하던 별시가 17~18세기에 접어들면 연평균 1.3회 실시에 평균 18.8명으로 크게 늘어났던 것이다(차장섭, 1997, 『조선후기 별열연구』, 일조각, 91~100쪽).

96)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97) 차미희, 1999, 『조선시대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151~161쪽. ; 박현순, 2014, 앞의 책, 277~285쪽

있는 집안의 자제들'로 채워짐에 따라 지방의 校生들은 자포자기하여 글자조차 모르는 자도 많은 실정이라고 비판하였다. 유형원은 공자의 '가르치는데 차별이 없다(有敎無類)'는 말과 같이 교화를 베풀면 어느 지역이건 興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관직진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하였다.⁹⁸⁾

당시 소과인 생원·진사시 선발인원 총 1,400명 중 한성시가 400명으로 28.6%를 점하였고 문과초시에서도 총 240명 중 한성시가 40명으로 16.6%를 차지했던데 비해 유형원은 서울지역 인원 비율을 태학선사 50명 중 8명(16%), 중학·영학의 선사 225명 중 12명(5.3%)으로 크게 감축하였다. 특히 전체 소과 인원의 5%(70명)와 6.4%(90명)에 지나지 않던 황해·함경과 평안도의 인원을 각각 8%(선사 12명·승사 18명), 10%(선사 16명·승사 24명)로 상향조정하였다.⁹⁹⁾ 평생 향촌에 묻혀 살았던 자신의 처지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유형원은 호구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새롭게 구획한 군현제를 바탕으로 공거선발 인원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고자 했다.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추동력으로 작용할 터였다. 각읍에서 올라온 營學과 中學의 升士 사이의 지역별 수준차도 새로 진입하는 자들과 태학에 선발되지 못한 자들이 섞여 일정규모의 집단에서 항상적으로 경쟁하므로 태학에 올라가는 選士의 질적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동일한 단계를 거치는 太學도 마찬가지였다.¹⁰⁰⁾

98)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99)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學校事目 유형원의 각급 교육기관의 정원은 당시 제도와 크게 차이가 없으나 군현제를 대부·도호부 4만경, 부 3만경, 군 2만경, 현 1만경을 기준으로 개편하면서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했다. 學田·公糧·下人道 이를 기준으로 배정하도록 하였다.

100)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유형원은 서북지역의 경우 학교가 설치되기까지 각각 2명을 줄여 경학에 배정했다가 5~6년이 경과되어 학교가 설치되면 원래 정원을 회복시켜 주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두도록 하였다.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의 정원을 감축하기 어려운 현실도 공거제가 정착되면 바로잡힐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정원을 호구의 實數대로 해야 한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유형원의 공거제는 향촌사회 말단의 지역공동체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보좌하는 관료사회에 이르기까지 제도운영의 대상이자 주도 집단을 상정하고 구상되었다. 전술한 바 ‘士類’로 지칭되는 범주였다. 이들이야말로 왕조의 지배엘리트를 충원하고 정치권력을 재생산하는 계층으로, 유형원이 염두에 둔 정치·사회적 지향을 일정하게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당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갓 門地만 숭상하고 습속이 구차하게 이루어져
 족속과 세대의 빛나고 빛나지 못함만 따지고 行義의 수양여부는 묻지
 않는다. 만약 世族의 자손이면 비록 용렬하고 비루한 자라도 그 지위가
 卿相에 통하고 집안이 한미하면 비록 큰 덕과 우수한 학식을 가진 사람
 이라도 士類의 반열에 들지 못하니 世道가 올라가지 못하고 인제가 흥
 하지 않으며 刑政이 문란한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先王
 이 道를 체현하여 세상을 바로잡았던 본의이겠는가?¹⁰¹⁾

유형원은 당시 관료에 나아가는 기준이 개인의 능력이나 인품보다 문벌이 우선시 되어 좋은 집안의 자손들은 재능이나 인격에 결함이 있는 자라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집안이 한미하면 덕망과 학식을 갖추더라도 士類에 끼지 못하는 현실을 시종 비판하였다.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인재의 사장, 국가운영의 난맥은 모두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에서 핵심적인 범주로 지목한 ‘士類’와 관련한 역사적 경험으로서 사회신분 구조는 15세기 사회의 그것과 대단히 흡사하다. 법제적으로 양천제를 표방한 15세기 양인은 학생과 관료를 선발하는 모집단이자 군역을 통해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국

다고 하면서 서울의 선비들이 각기 고향에 안착한 후에도 서울의 인사가 배정한 儒額보다 많다면 인원수를 줄이지 않고 四學의 儒額을 120명으로 늘리도록 하였다.

101)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역부담자이기도 했다. 신분이동의 개방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15세기 '양반'은 사회계층적 의미보다는 관료로서 有職者의 의미가 강했다.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그 아들이 無職者면 庶人으로 간주되었고 양반도 관직을 없으면 庶人이 되었다. 工匠·商人·干尺類·奴婢 등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功臣·文班 등 관원이 가장 상위신분으로 간주되었고 生員·進士·有蔭子弟·成衆官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16세기로 접어들어 사림의 등장과 사족세력의 성장으로 사족은 庶族과 족단적으로 구별되면서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상위신분을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사족과 중인, 그리고 상한의 분화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이제 양반사족은 양인·노비와 대칭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⁰²⁾ 지방사회에서도 중앙관료의 낙향생활과 吏族勢력의 대거 중앙정계 진출로 士族과 吏族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같은 토착이족 출신이면서도 한쪽은 중앙에 진출하여 재경관료가 되고 다른 한쪽은 다시 吏族과 士族으로 분화되어나갔다. 재지사족은 이족, 즉 향리세력과 구분되는 지방지배세력으로 성장하였다.¹⁰³⁾

이들은 점차 문벌을 형성해 갔거니와 같은 양반이라도 사족·품관의 구별이 있고 같은 사족 내에서도 大家·名家 등의 구분이 있었다. 누대에 淸華要職을 거친 顯官을 배출한 宦族, 명망있는 학자의 집안, 忠節·孝烈者의 배출 등이 문벌가문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들은 족보간행·종약·종회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족집단으로서 상호 결속을 꾀하고 혼인이나 학연·당색에 의해 유대를 다졌다.¹⁰⁴⁾ 17세기 접어들어 양반사족층이 특권적 문벌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국가 통치체제는 점차 경직화하고 사회적 유동성은 점차 약화되기에 이른다. 예컨대 조선전기 전체의 1%인 30명 이상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19개 가문은 전체의 30.1%에 해당하는 902명의 급제자를 배출한 반

102) 한영우, 1983, 「조선초기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시론」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396~401쪽

103) 이수진, 1995,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04) 정만조, 1975, 앞의 글, 105~107쪽

면 후기로 접어들면 전체의 1%인 101명 이상 급제자를 배출한 26개 성관은 전체의 46.4%에 해당하는 5,123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17세기 인조대 이후 문과 급제자는 급격하게 특정소수가문으로 집중되고 있었고 이 또한 이 시기 閥閥의 형성과 관련되었다.¹⁰⁵⁾ 이같은 상황이 유형원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왔던 것이다.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그러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名分은 천지자연의 이치이니 어찌 엄하게 따지지 않겠는가? 소위 명분이라는 것은 본래 귀천의 다른데서 나온 것이며 貴賤은 본래 사람의 현명한지 여부가 다른데서 생긴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善惡貴賤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조상의 관직이 훌륭한지 여부만을 따지면서 명분을 엄하게 한다고 하니 의리에 합당하겠는가?¹⁰⁶⁾

명분, 즉 신분간의 차등은 '천지자연의 이치'로 그 기준은 귀천이 다르다는 점인데 그 귀천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 현명한지 여부에 의해 판별된다는 것이다. 유형원이 보기에 해당 인물 자체의 賢能 여부가말로 명분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임에도 이를 도외시키고 명분을 엄하게 한다고 하면서 문벌만을 따지는 풍토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형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士類였다. 그는 士類가 아니면 향약에 班列하지말라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士類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른바 士族이라는 것과는 그 뜻이 다르다. 소위 士類라는 것은 儒行을 다스려 士類가 된 자이며 士族이라는 것은 士夫子孫의 姓族에 속하는 것이다. 만일 行義를 기준으로 한다면 천하가 다투어 德行을 권하여 禮俗이 이루어질 것이고 門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직 문벌만 따질 것이니 爭端이 일어나게 된다.¹⁰⁷⁾

105) 차장섭, 앞의 책, 50~62쪽 ; 115~124쪽

106)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107) 『磻溪隨錄』 卷9, 敎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士類란 '儒士의 行實을 다스려' 도달한 지위로 상대적으로나마 성취적 요소를 일정하게 포함하는 범주였다. '士族'이 '士夫家門의 후손들(士夫之子姓族屬)'으로 혈연적·귀속적 색채가 강한 존재였던 점과 비견된다. 따라서 士類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문벌중심 사회의 난맥을 극복해야만 덕행과 예속의 확대를 통해 교화를 이루는 바탕이 되리라는 것이 유형원 주장의 골자였다. 그가 지역의 鄉籍에 門地가 있는 양반만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문벌을 따지지 말고 入錄되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士類'에는 '學行이 뛰어나고 才德이 알려진(學行才德) 선비'나 '과거를 통해 관직을 역임한 사람(占科歷官之人)'이 거론되었다.¹⁰⁸⁾ 구래의 世族들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士類에 포괄될 수 있었다. 유형원이 士類의 범주를 새롭게 규정한 것은 가문적 배경을 내세운 閥族의 관직독점으로 관료들의 자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풍속의 교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관료인력풀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우수한 인재가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유형원이 생각한 '士類'의 범주는 중간계층에 속하는 吏胥나 庶孽까지 포섭될 정도로 유연했다. 서리·서얼은 하층양반 및 상층양반과 겹치면서 미묘하지만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유형원은 중간계층을 中人이나 閑散·方外 등으로 불리우는 庶族과 大夫·士의 첩 소생인 庶孽로 나누고 이들도 教選의 인재선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하였다. 조정의 人事는 사람의 賢否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門地는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유형원의 주장은 당시 활발히 논의되었던 서얼허통 문제를 배경으로 했다. 조선 초 이래 서얼과 그 자손에 대한 과거 응시자격 제한은 16세기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인조 23년(1645) 양첩소생은 손자 대부터, 천첩소생은 증손자 대부터 문과에 응시할 수 있도

108)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록 하였고(『許通事目』), 같은 왕 23년(1645)에는 서얼이 과거에 응시할 때 ‘許通’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서얼들은 문과응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유형원 당대는 재정확보나 정치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 限代的 과거응시의 허용으로 서얼 허통이 바야흐로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과도기로 사실상 경제력을 갖춘 서얼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결국 숙종 22년(1696) 서얼의 과거응시는 전면 허용되기에 이른다.¹⁰⁹⁾

서얼을 허통하여 등용하자는 유형원의 주장은 엄밀히 말해 신분제를 부정하거나 적서간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적서를 포함한 신분간의 계선은 여전히 넘어서는 안 될 벽이었다. 가족 내의 적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했다. 가내에서 庶孳는 嫡長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며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庶兄弟는 결코 嫡兄弟와 자리를 함께 하거나 대등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왕실이나 경대부의의 적서 간에도 品位·賜稅나 蔭田에 차등을 두어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족을 넘어 향당학교 이상의 사회적 공간에서는 어디까지나 나이가 서얼을 매기는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학교와 같은 공식석상에서는 적서 간에 相避를 두어 가족 간의 사적 차등(私恩)과 공적 원칙(公義)이 충돌하지 않게 배려해야한다고 하였다.¹¹⁰⁾

당시 서얼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유형원과 마찬가지로 私家·宗族의 명분과 公家·官位の 명분을 엄격히 구분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적서의 명분이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천륜의 하나로 타협이 있을 수 없었지만 官位の 경우는 재능과 덕행에 의해 왕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서의 구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¹¹⁾ 유

109) 배재홍, 1993, 「조선후기 서얼과거합격자의 성분과 관력」 『조선사연구』 2; 차미희, 2006, 앞의 책, 49~54쪽

110) 『磻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111) 송준호, 1976, 「조선시대의 과거와 양반 및 양인 (I)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보』 69, 124쪽

형원도 이러한 주장과 의견을 같이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선비와 이들 중간계층 간의 미묘한 신분적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유형원은 학교에 입학한 이서의 아들이 학업에 종사하고 그 아버지는 '관청 앞뜰에서 분주히 심부름하는' 불편하고도 모순된 상황을 예로 들면서 '대개 관청의 뜰에서 뛰어다니며 심부름하는 것은 자신의 官長을 위함이지 자신의子弟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학생들 간의 序次는 신분을 따지지 말고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잘라 말하였다.

나이대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그 業이 같기 때문이지 이서의 아들이라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직 이와 같기 때문에 형제간이라도 동생이 士이고 형이 民이면 동생은 士에 속하나 형은 이에 속할 수 없다. 같은 사람이 士가 되었다가 나중에 民이 되면 전에는 士의 반열에 들어도 뒤에는 여기에 들 수 없다.¹¹²⁾

士·민간의 구분을 자신이 종사하는 '業', 즉 직역·직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때문에 이서의 자식이라도 학업에 종사하면 예외 없이 士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하게 '士'로 간주될 경우 이들간 서차를 따지는 기준은 오직 나이였다. '士'는 대단히 탄력적인 범주로 형제간에도 業에 따라 士와 民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業이 바뀌면 士민이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신분보다 직역이 중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鄉黨莫如齒'라는 曾子の 말이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었거니와 나이를 기준으로 序次를 매기자는 주장은 『주례』의 근거와 이황의 말을 원용하여 더욱 강조되었다. '鄉黨學校'의 경우, '長幼의 자리를 정하고 풍속을 돈독히 하기 위해 '尊者·長者·敵者·少者·幼者'와 같이 나이가 유일한 序次의 기준이 되고 門地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¹¹³⁾ '業이 같으면 일이 같고 일이 같으면 班列이 같으므로 나이로 차례를 삼는 것이 천

112) 『磻溪隨錄』 卷10, 教選之制 下 貢舉事目

113)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하의 通義'라는 것이다.¹¹⁴⁾

이 같은 방식도 중종대 기묘사림들이 향약의 坐次를 정하면서 나이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기묘사림들은 낮은 신분이 높은 신분을 무시하고 친한 자가 귀한 자를 깔봐 명분이 문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6세기를 거쳐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사족들은 향촌사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얼이나 교생·충찬·별시위 등 庶人有職者 등 非士族層을 순수사족과 일차적으로 구분한 후 그 내부에서 나이에 따라 좌차를 정하도록 했다. 사족들의 신분관이 점차 보수화되어 혈연적인 문벌의식은 더욱 굳어짐에 따라 鄉籍(面籍)에 양반사대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庶族·庶孽은 學行이나 才德이 출중하더라도 허락되지 않았다.¹¹⁵⁾ 유형원의 생각은 사람의 이념을 이어받은 것으로 특권문벌 세력들이 향촌사회 운영은 물론 각급 학교에서 보이는 행태가 교화·교육은 물론 인재선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이상과 같은 구상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을 예견한 듯 유형원은 '한갓 금령의 말단만 가지런히 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옛것을 고치기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고식적으로 구차히 간략하게 하는 것은 모두 治道를 아는 자가 아니다. 또한 時俗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은 필부의 處世하는 방법이요, 정치를 행하는 王者가 마땅히 할 말이 아

114) 『礪溪隨錄』 卷10, 敎選之制 下 貢舉事目

115) 한상권, 1984, 앞의 논문 24~43쪽. 이이의 「서원향약」과 「사창계약속」은 사족층과 하인층이 함께 참여한 上下合契의 최초 사례로 17세기 여러 향약의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講信 때 座次에서는 향약의 구성원을 크게 士族과 庶人 이하로 구분하였다. 서인 이하는 다시 庶人有職者, 사족의 서얼, 향리, 庶人無職者, 公私賤으로 위계화하였다. 「사창계약속」에도 좌차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庶人有職者는 庶族有職者로, 庶人無職者는 하인·양인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庶族有職者에 대해서는 '사족이 아니면서 양반을 칭하는 교생·충찬위·별시위의 부류를 이른다'라고 註記되어 있다. 이들이 서얼과 함께 중인층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박현순, 2017, 앞의 글).

니다. 時라는 것은 임금과 정승이 행할 때이며 俗이라는 것은 정치와 교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하면서¹¹⁶⁾ 德을 기준으로 類를 나누고(考德分類), 類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매기면 덕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아래 신분이 사족을 업신여기는 폐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¹⁷⁾

士類의 개념이 유연한 만큼 학업자로서 자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나 학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할 경우, 일반양인과 마찬가지로 군역에 종사해야 했다. 20세 미만자나 '世嫡', '有親有蔭者', '諸衛'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너그러운 처분을 당부하면서도 학업을 태만히 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자나 3년마다 실시하는 고강에 불합격할 경우 퇴교시켜 군역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保布를 부담하는 공전 1경 외에 受田도 반납해야 했다.¹¹⁸⁾ 사류 중심 교학체제 운영 구상에는 문벌특권층인 '世族'의 자기쇄신을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유형원은 士類의 대부분은 '世族의 子弟'로 일반민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고 신분하락의 우려가 없어 무사안일한 태도로 타성에 젖어있다고 비판하면서 유능한 사람만 발탁하여 '부귀한 사람'도 신분적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世族도 분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객관적 조건이 훨씬 좋은 이들 世族으로부터 인재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무마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 같이 유형원은 종래 문벌 중심의 世族과 구분되는 士類를 국가운영과 사회교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재 풀로 설정함으로써 가문적 배경에 안주하여 자기 수양과 학업을 게을리 하는 세족에게 경종을 울리고 분발을 촉구하고자 했던 것이다.¹¹⁹⁾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유형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교육제도를 흡수·통합하여 공적 교학제도로써 일종의 천거제인 공거제

116) 『磻溪隨錄』 卷10, 教選之制 下 貢舉事目

117) 『磻溪隨錄』 卷9, 教選之制 上 鄉約 鄉約事目

118) 『磻溪隨錄』 卷10, 教選之制 下 貢舉事目

119) 『磻溪隨錄』 卷10, 教選之制 下 貢舉事目

를 제시하였다. 공거제는 면리 단위의 자율적 학교인 이숙·향상을 저변으로 읍학·대학·진사원의 교육과정을 철저히 인물자체의 학업과 덕행을 평가요소로 공문에 의해 검증·선발하는 체제로 구성되었다. 학제와 관료선발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관직진출 기회의 확대를 통해 체제교학의 균질적 확산을 도모한 공거제는 제도 운영의 대상이자 주도집단으로 ‘士類’層를 지목하였다. 문벌을 배제하고 품행과 학문을 기준으로 설정한 ‘사류’는 구래의 世族은 물론 이들보다 家格이 떨어지는 양반이나 전직 관료, 그리고 이서·서얼·양인까지도 포괄할 정도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범주였다. ‘사류’집단이라는 형태로 관료예비군은 엄정한 관리와 양성이 이루어졌고 이는 보다 우수한 인재선발의 전제였다. 이들이야말로 향촌사회 내부의 교화를 주도하고 국왕을 도와 왕조국가를 운영하는 인적 자원의 중추였다. 상인·무당·노비 등의 계층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사류의 성격은 사회계층적 의미보다는 有職者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15세기 양반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학생은 가문적 배경이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동일한 학습자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 간의 좌차는 나이가 기준이 되었다. 유형원의 주장은 신분제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문제제기가 아니라 당시 문벌세족이 지나치게 폐쇄적·특권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사회교화와 국가운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삼대고제의 이상적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국초의 사회신분원리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사람과를 비롯한 당대의 개혁론자들의 견해를 계승, 성리학적 교화의 균질적 확산과 인품과 능력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종합적 구상으로 제기된 것이었다.¹²⁰⁾

120) 유형원은 삼대를 교육·선거제도가 완비된 이상적 시기로 평가했다. 漢代의 교육제도는 미비하지만 察舉制를 통해 고대 鄉舉里選의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에 인재를 잃지 않고 풍속이 순실함을 숭상하여 부허하거나 거짓을 꾸미거나 하는 풍습은 없었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위진시대는 찰거제의 변형인 9품중정제를 시행한 시기로 후한말의 병폐가 심화된 시기로 이해했고 수당 이후는 과거제가 시행됨으로써 文詞로만 관료를 뽑아 인재를 얻지 못

V. 맺음말

국가적 차원의 교화·교육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관료의 선발은 유형원이 기획한 이상국가 운영을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었다. 유형원은 학제를 규정하고 관료선발의 기능을 담당할 과거제가 문벌 중심의 파행적 운영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그 대안으로 공거제를 내세웠다. 공거제는 '教選'의 이념 하에 성리학에 침윤된 충실한 왕민의 양성과 우수한 관료의 선발이라는 두 가지 지향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낸 총체적인 개혁안으로 고제를 참고하고 17세기 당대의 현실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입론되었다.

유형원은 민에 대한 교화와 교육이 단순히 문자적 지식의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국가까지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는, 광범위한 사회·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공전제를 통한 養民은 그 전제조건이었다. 교화의 저변을 갖추기 위해 유형원이 일차적으로 중시한 것이 바로 향약이었다. 이는 16세기 사림파에 의해 추진된 이래 꾸준히 이어져 온 관 주도 향약실시론의 흐름을 이어받아 향촌사율의 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향약과 학제의 연계 논의는 유형원의 교선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향약의 운영은 향소를 통해 도회(읍)-사사회(면)의 조직 예하에 동계·동약 등 촌락단위의 자율적인 조직과 결사를 포섭하여 성리학적 도덕률로 분식된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민 상호간의 부조적 보험을 강화하고 교화의 일상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 향촌사회 내부의 자율적 운영원리는 적극적으로 인정되었고 사안에 따라 관의 행정적 통제가 가해졌다. 유형원은 향촌내 교화의 주도세력으로 '士類'를 지목하였다.

해 끝내 오랑캐가 중화를 어지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였다(최광만, 2006, 앞의 글).

이같이 향약을 통해 구축한 교화의 기반을 바탕으로 학제와 관료 선발 체제를 연계시킨 것이 바로 貢舉制였다. 여기에는 官學의 침체와 科擧制의 모순으로 교육과 관료선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성균관과 향교 등 관학체제는 크게 침체되어 본연의 취지가 크게 퇴색한 상태였고 그 기능은 새롭게 대두한 書院 등 私學이 대체해가고 있었다. 왕조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별도의 부담없이 私學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한 인재를 뽑아쓰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유형원은 과거제가 문장만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치중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응시자의 사행심만 부추기는 등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형원이 과거제의 대안으로 내세운 공거제는 향촌 내부의 교화에서부터 단계별 교육과정을 거쳐 관료예비군을 양성한 위에 최종적으로 관원선발까지 전과정을 국가차원의 공적 제도를 통해 체계화 한 것이었다.

향촌사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된 里塾과 坊庠·鄉庠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 읍학(지방)·사학(서울)의 3년간의 수학과정을 거친 후 이들 가운데 升士가 선발되어 영학(지방)과 사학(서울)에 입학하였다. 승사는 1년을 공부한 후, 최고 교육기관인 太學에 입학하여 選士가 되었다. 이 가운데 邑學·四學 입학은 사적 공간에서 공거제라는 공적 교육기관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입학자인 ‘士’는 학생이자 관료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바로 士와 民의 분기가 일어나는 지점이었다. 상급학교로의 단계별 진학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衆議와 公論에 의해 이루어졌고 고강·제술성적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았다. 태학의 選士 중 선발된 35명이 進士院에 들어가 인품과 실무능력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7~9품직에 임명되었다. 특별히 뛰어난 평가를 받은 자는 이와 무관하게 상위직에 임명되었다. 관직임명자의 나이는 40세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상급학교로의 진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천거는 태학·중학의 長과 貳官, 四學의 敎導와 敎授, 지방의 監司·都事·守令·敎官이 계통별로

담당하였다. 이들에게는 권한과 함께 책임도 따랐다. 피천거자가 부적격하거나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여 사적인 이해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수한 인물을 추천할 경우 論賞되었다. 각 급학교의 장과 교관들은 최대한 예우하도록 하고 학생 정원도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은 公田과 經費를 통해 뒷받침되었다. 공거제 체계에서 학제의 기간을 이루는 것은 읍학으로 밑으로부터 축적된 교화의 성과를 위로부터의 관료선발제로 적절히 흡인해내기 위한 관료예비군 양성의 전국적 거점이었다. 유형원의 '교선'구상도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읍학의 운영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형원은 장기예측을 통해 공거제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제 운영과 관료수급에 오작동이나 과부족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유형원의 공거제는 사람과에 의해 제기되던 천거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공론이나 여론 등 장기간의 공개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 것으로 학제와 관료선발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적 학교제도와 관료선발 기능을 연계시킨 것으로 바로 '교선' 이념의 구체적 제도화였다. 지역적으로는 인재선발의 서울 편중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고른 관직진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체제교화의 균질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유형원이 공거제의 운영의 대상이자 주도집단으로 상정한 士類層은 문벌을 배제하고 품행과 학문을 기준으로 구래의 世族은 물론 한미한 집안이나 이서·서얼층까지 포괄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범주였다.

'사류'는 향촌사회 내부의 교화를 주도하는 중심계층이자 국왕을 도와 국가를 운영하는 인적 자원의 중추였다. 상인·무당·노비 등의 계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류의 성격은 사회계층적 의미보다는 有職者의 성격이 강했던 15세기 양반이 표상하는 사회신분제 운영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각급학교에 입학하여 일단 '사'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이들은 동일한 학습자로 간주되어 나이를 기준으로 좌차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유형원의 주장은 신분제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문제제기가 아니라 당시 문벌세족이 지나치게 폐쇄적·특권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사회교화와 국가운영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삼대고제의 이상적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국초의 사회신분원리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敎選의 이념을 현실에 적용하여 성리학적 교화의 균질적 확산과 인품과 능력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종합적 구상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주제어 : 柳馨遠 貢舉制 科擧制 敎選 鄉約 士類 里塾 鄉庠 邑學 太學 學制 選士

투고일 : 2018. 06. 07. 심사완료일 : 2018. 09. 06 게재확정일 : 2018. 09. 07

참고문헌

『磻溪隨錄』, 『朝鮮王朝實錄』

- 강창동, 2005, 「과거제 선발경쟁의 교육사회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2
- 菅野修一, 1981, 「李朝後期の郷所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1981
- 金翰奎, 1977, 「西漢의 求賢과 文學之士」 『歷史學報』 75·76
- 김동인, 1994, 「察舉制의 이념과 실제」 『교육사학연구』 5
- 김용덕, 1978, 「향청연혁고」 『향청연구』, 한국연구원
- 김용덕, 1990, 「김기향약연구」 『조선시대향약연구』 민음사
- 김재섭, 2002, 「반계 유형원의 교육개혁사상 - 공교육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4
- 김준석, 1993, 「유형원의 정치·국방체제 개혁론」 『동방학지』 77·78·79
- 渡部學, 1969, 『朝鮮教育史研究』, 雄山閣, 東京
- 萬振超, 2017, 「17세기 한중실학자의 교육개혁안 비교연구」 『한국실학연구』 33
-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 박현순, 2017, 「17~18세기 향약의 반상간 부조에 대한 고찰-사족층과 하인층의 결합양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2
- 박훈, 2017, 「'봉건사회'·'군현사회'와 동아시아 '근대'시론」 『동북아역사논총』 57
- 배재홍, 1993, 「조선후기 서얼과거합격자의 성분과 관력」 『조선사연구』 2
- 福井重雅, 1988, 『漢代官吏登用制度の研究』, 創文社
- 성열관, 2015, 「메리토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로-마이클 영의논의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3-2
-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공'이념과 이상국가론」 『조선시대사학보』 64
-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민족문화연구』 5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송양섭, 2013, 「반계 유형원의 왕실재정 개혁구상」 『역사와 담론』 64
- 송양섭, 2014, 「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27
- 송양섭, 2018, 「반계 유형원의 관제개편 구상」 『조선시대사학보』 86
- 송양섭, 2018,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개혁 개혁구상과 녹봉제실시론」

(한국실학학회발표문)

- 송준호, 1976, 「조선시대의 과거와 양반 및 양인 (I) -문과와 생원진사시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보』 69
- 송찬식, 1976, 「조선후기 교원생고」 『국민대논문집』 11
- 신채식, 1981, 『송대관료제연구』, 삼영사
- 신해순, 1999, 「16세기 성균관 교육의 침체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사연구』 106
-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 민병희 옮김, 2012 『잃어버린 근대성들』, 너머북스
- 오영교, 2001,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해안
- 우현정, 2013, 「유형원의 잡학교육개혁론 재고-잡과방목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3-2
- 윤희면, 1990,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 이문원, 1995, 「반계 유형원의 교육관」 『교육연구』 29,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 이범직, 1976, 「조선전기의 교생신분」 『한국사론』 3
- 이범직, 1976, 「조선전기의 유학교육과 향교의 기능」 『역사교육』 20
- 이선민, 1988, 「이이의 경장론」 『한국사론』 18
- 이성무, 1967, 「선초의 성균관 연구」 『역사학보』 35·36합집
- 이성무, 1969, 「조선초기의 향교」 『이상옥박사회갑기념논문집』
- 이성무, 1991, 「여씨향약과 주자증손여씨향약」 『진단학보』 71·72병합호
- 이성무, 2000,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 이성무, 2004, 『한국의 과거제도』, 한국학술정보
- 이수건, 1995,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 이원호, 1976, 「반계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 『벽계이인기박사교회기념교육학논총』
- 이원호, 1984, 『반계 유형원의 교육론 연구』 『사대논문집』 8
- 이혜준, 1990,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 조직의 성격」 『조선후기향약연구』 민음사
- 임민혁, 2002, 『조선시대 음관 연구』, 한성대출판부
- 전경목, 2003, 「향교의 개혁안과 수령권의 강화」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 전도웅, 1998, 「반계 유형원의 교육제도개혁론과 경학사상」 『인문사회과학연구』 2

- 전도웅, 1998, 「반계의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구상」『용인대학교논문집』 15
- 전도웅, 1998, 「반계의 잡학 및 잡과제도 구상」『인문사회과학연구』 1
- 정구복, 1970, 「반계 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역사학보』 45
- 정구선, 1995, 『조선시대 천거제도연구』, 초록배
- 정만조, 1975,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한국사론』 2
- 정만조, 1989,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만조, 1998, 「조선후기의 향촌교학진흥책에 대한 검토」『한국학논총』 10, 국민대
- 정윤희, 2016, 「19세기 중엽 한주 이진상의 현실인식과 국가체제개혁론」『조선시대사학보』 79
- 조성산, 2017, 「18~19세기 조선 봉건·군현제 논의의 역사적 전개」『역사학보』 236
- 차미희, 1999, 『조선시대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 차미희, 2006, 「실학자의 교육제도 개혁론 : 연구현황과 과제」『한국실학사상연구』2, 혜안
- 차장섭, 1997, 『조선후기 별열연구』, 일조각
- 천관우, 1952·1953, 「반계 유형원 연구」上·下, 『역사학보』 2·3
- 최광만, 2004, 「반계 유형원의 교육개혁론 분석」『교육사학연구』 14
- 최광만, 2010, 「『반계수록』 「교선고설」에 나타난 유형원의 교육사관」『교육사학연구』 20
- 최광만, 2017, 『조선후기 교육사 탐구』, 충남대출판문화원, 2017
- 최이돈, 1996, 「천거제의 시행과 관료충원방식의 변화」『한국사』 30
- 최이돈, 2010, 「16세기 사림파의 천거제 강화운동」『한국학보』 54
- 平田茂樹 지음, 김용천 옮김, 2007 『科擧와 관료제』, 동과 서
- 한상권, 1984, 「16·17세기 향약의 구조와 성격」『진단학보』 58
- 한영우, 1983, 「조선초기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시론」『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 황경로, 2001, 『반계 유형원의 교육개혁론 연구』, 강원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ABSTRACT>

Ban'gye Yu Hyöngwön's Theory of Kyosön and Plan for Konggöje

Song, Yang-Seop

In his Konggöje (貢舉制: Recommendation System), Yu Hyöngwön systemized the Hyang'yak (鄉約: Community Compact), a local autonomous regulation, at the state level under the ideology of 'Kyosön (教選: Education and Recruitment)', which made the total reformative plan aiming for both raising loyal subject of the king permeated with Neo-confucianism, and recruiting excellent bureaucrats. In Konggöje, which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it was in the public system where Yu systematized the whole process from accumulating the reserve bureaucrats throughout the phased courses of education, until being appointed as the actual bureaucrats ultimately. Among the phased school system, Ŭp-hak (邑學: Schools based on the unit of County and Prefecture) was centered, and it made the countrywide base for raising the reserve bureaucrats by adequately absorbing the outcome of Kyohwa (教化: Education) accumulated from the below with the bureaucratic recruitment system from the top. As Konggöje was designed to recruit resources by long-term, opened, comprehensive verification, Yu planned for the homogeneous diffusion of systemed teaching and learning by resolving the discord between the school system and the recruitment system and giving regionally

balanced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offices. The Class of Saryu (士類: Literati, Scholars), suggested as the main targets for the Konggöje as well as the leading group, was a flexible, elastic category including not only hereditary lineages from old times but also poor lineages or even Isö (吏胥: lower functionaries) and Sö-öl (庶孽: sons of concubines) under criteria of behavior and learning. Yu Hyöngwön's opinion was not a denial nor a questioning of social status itself, but was a comprehensive design for the homogeneous diffusion of Neo-Confucian Kyohwa and the recruitment of resources who excels at both talents and behaviors, adopting the ideology of Kyosön while rousing the experience of the principle of social status in the early Chosön period and applying the ideal intent of Samdae Koje (三代古制: 'Ancien Régime' of Three Dynasties of Antiquity) under the condition recognizing that Kyohwa of society and management of the state were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reality where his contemporary hereditary lineages degenerated into extremely exclusive, privileged group.

Key words : Yu Hyöngwön, Konggöje (Recommendation System), Kwagö (Civil Service Examination), Kyosön (Education and Recruitment), Hyangyak (Community Compact), Sa (Literati: Scholar), Risuk, Hyangsang, Ŭp-hak, T'aehak, School System, Recruitment of Literati